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8
- 3. 예산안 주요 특징 10

II. 주요 현안 분석 / 12

- 1. 예산조정 등 하수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2
 - 1-1.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3
 - 1-2. 도시침수 대응 15
 - 1-3. 하수처리수 재이용 18
- 2.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방식 개선 23
 - 2-1. 기존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저조원인을 감안한 2018년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5
 - 2-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검토 필요 32

III. 개별 사업 분석 / 36

-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용자금 예산 조정 검토 필요 36
- 2.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한 적정예산 반영 필요 38
- 3. 사업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규모 결정 등 41



4.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45
5. 2017년 추경물량을 고려한 노후경유차배출저감사업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47
6.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역 타당성 검토 필요	49
7. 사업추진이 부진한 생태탐방연수원과 에코촌 건립사업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2
8.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우제류 복원시설 설치사업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56
9.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근거 미흡	58
10.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60
11. 출연금을 통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필요	62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연구단지 부과 폐수처리비 수입예산에 반영 필요	64
13. 전문무역상사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필요	66
14.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원인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제고 필요	71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 75

1. 현 황	7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80
3. 예산안 주요 특징	82

II. 주요 현안 분석 / 84

1.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84
------------------------------------	----



CONTENTS

1-1. 고용보험기금 수입 과다 산정 문제	84
1-2.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여 의무지출의 적정 지급기준 설정 필요	88
1-3. 모성보호 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92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95
2-1.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97
2-2.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긴밀한 연계 필요	98
2-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의 연내 구축 필요	104

Ⅲ. 개별 사업 분석 / 105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재정부담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105
2. 기존 장년고용지원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시범사업의 사업 준비 철저 필요	109
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3
4.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117
5.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회의수당 적정 편성 필요	120
6.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미흡	123
7.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관련법률 근거 마련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128
8. 사회적기업 육성 모태펀드의 투자처 다양화 필요	132
9.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과다 추계	135
10.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사업의 대체인력 실적치 (기간 및 인력규모)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38
11. 직장여성아파트 2018년 보증금 반환금 지출예산 반영 필요	141
12. 일학습병행제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훈련기간을 고려한 예산 검토 필요	143
13.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의 연속지원 제한 검토 필요	145



14.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사업의 외국인근로자 서비스 확대 필요	148
15.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50
16.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평균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검토 필요	153
17.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노력 필요	156
18.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직서비스 제공 필요	159
19.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 과다계상 개선 필요	161
20.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사업 적정 교육단가 검토 필요	164

[기상청]

I. 예산안 개요 / 171

1. 현 황	17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72
3. 예산안 주요 특징	174

II. 개별 사업 분석 / 175

1.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비 예산 조정 필요	175
2. 지진관측장비의 적기 도입·설치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정비 필요	178
3.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 예산 조정 필요	181
4. 연구용 소형레이더 도입 관련 예산집행의 효과성 제고 필요	183
5.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의 추진기반 강화 필요	185
6.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188
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관 출연예산 세부사업 편성 필요	191



환경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전년대비 3,333억원(5.5%) 감액된 5조 7,112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2,8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가 4조 6,66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억 600만원이다.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5,450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07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56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72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3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 일반회계	205	225	0	228	3	1.3
- 환경개선특별회계	5,593,590	4,893,015	5,031,200	4,666,376	△364,824	△7.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500	0	500	0	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967	1,806	0	1,806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3,473	0	0	0	0	0
기 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577,351	513,433	513,433	544,957	31,524	6.1
- 금강수계관리기금	255,208	115,888	115,888	125,550	9,662	8.3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0,918	242,129	242,129	250,720	8,591	3.5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4,819	89,438	89,438	87,233	△2,205	△2.5
- 석면피해구제기금	61,618	49,867	49,867	33,823	△16,044	△32.2
합 계	6,712,149	5,906,301	6,044,486	5,711,198	△333,288	△5.5

주: 총수입 기준
자료: 환경부

2018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6조 5,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6억원(4.5%)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2,76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91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67억원이다.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658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1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15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3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724,572	5,728,691	5,890,786	5,587,759	△303,027	△5.1
- 환경개선특별회계	4,590,366	4,458,930	4,597,115	4,276,407	△320,708	△7.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1,493	108,050	108,050	83,177	△24,873	△23.0
- 지역발전특별회계	730,009	810,040	810,040	791,520	△18,520	△2.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2,704	351,671	375,581	436,655	61,074	16.3
기 금	935,021	933,991	933,991	927,404	△6,587	△0.7
- 한강수계관리기금	476,378	474,429	474,429	465,808	△8,621	△1.8
- 금강수계관리기금	238,986	115,228	115,228	121,483	6,255	5.4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8,238	241,940	241,940	241,128	△812	△0.3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9,159	87,626	87,626	83,632	△3,994	△4.6
- 석면피해구제기금	12,260	14,768	14,768	15,353	585	4.0
합 계	6,659,593	6,662,682	6,824,777	6,515,163	△309,614	△4.5

주: 총지출 기준

자료: 환경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조 6,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6억원(4.6%)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2018년 2억 2,800만원으로 1.3%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과 18억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5	225	0	228	3	1.3
환경개선특별회계	5,593,590	4,893,015	138,185	4,666,376	△226,639	△4.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500	0	50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967	1,806	0	1,806	0	0
지역발전특별회계	3,473	0	0	0	0	0
합 계	5,602,235	4,895,546	138,185	4,668,910	△226,636	△4.6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9조 2,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7억원(4.6%)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3조 3,674억원에서 2018년 3조 2,688억원으로 2.9% 감소하였고,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5조 312억원에서 2018년 4조 6,664억원으로 7.3% 감소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081억원에서 2018년 832억원으로 23.0% 감소하였다. 반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3,756억원에서 4,367억원으로 16.3% 증가하였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49,847	3,229,171	3,367,356	3,268,753	△98,603	△2.9
환경개선특별회계	4,907,622	4,893,015	5,031,200	4,666,376	△364,824	△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1,493	108,050	108,050	83,177	△24,873	△23.0
지역발전특별회계	690,873	810,040	810,040	791,520	△18,520	△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1,910	351,671	375,581	436,655	61,074	16.3
합 계	9,851,746	9,391,947	9,692,227	9,246,481	△445,746	△4.6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환경부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1조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억원

(3.1%)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159억원에서 1,256억원으로 8.3% 증가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99억원에서 338억원으로 32.2% 감소하였다.

[2018년도 환경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577,351	513,433	513,433	544,957	31,524	6.1
금강수계관리기금	255,208	115,888	115,888	125,550	9,662	8.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0,918	242,129	242,129	250,720	8,591	3.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4,819	89,438	89,438	87,233	△2,205	△2.5
석면피해구제기금	61,618	49,867	49,867	33,823	△16,044	△32.2
합 계	1,109,914	1,010,755	1,010,755	1,042,283	31,528	3.1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2018년도 환경부 소관 6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1조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억원 (3.1%)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159억원에서 1,256억원으로 8.3% 증가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99억원에서 338억원으로 32.2% 감소하였다.

[2018년도 환경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577,351	513,433	513,433	544,957	31,524	6.1
금강수계관리기금	255,208	115,888	115,888	125,550	9,662	8.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0,918	242,129	242,129	250,720	8,591	3.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4,819	89,438	89,438	87,233	△2,205	△2.5
석면피해구제기금	61,618	49,867	49,867	33,823	△16,044	△32.2
합 계	1,109,914	1,010,755	1,010,755	1,042,283	31,528	3.1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라. 재정구조

2018년도 환경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세출예산 3조 2,688억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액 전출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재정운용은 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동 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3,338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557억원이 각각 전출된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예산	기금
예산 : 5조 5,878억원	기금 : 9,274억원
일반회계 (3조 2,688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658억원
↓(3조 2,68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2,764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11억원
↓(3,33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915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1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2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3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67억원	(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
	(557억원) 기타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382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75억원)

주: 1. 총지출 기준임
2. 일반회계는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236억원 규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은 지중환경 위해위험 진단기술과 사후대응체계 개발을 위한 것이며,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은 살생물제 복합사용과 누적사용에 대한 안정성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노후상수도 정비(제주계정)와 생태하천복원사업(세종계정)은 동 회계 생활계정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생태하천정비사업의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을 신설한 것이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환경개선특별회계 (7개)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R&D)	5,700
	자원순환촉진지원	3,204
	유전자원정보관리	618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R&D)(환경부)	600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1,098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R&D)	2,134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117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	노후상수도정비(제주)	9,000
	생태하천복원사업(세종)	145
합 계		23,616

자료: 환경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대기개선추진대책 ②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③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대기개선추진대책은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는 전기자동차 보급물량과 충전소 설치물량의 확대를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의 증액은 가뭄 및 하천수질 악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20개)	구, 장항제련소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	17,844	17,844	23,372	5,528	31.0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2,097	47,122	42,454	10,357	32.3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9,769	9,769	33,897	24,128	247.0
	대기개선 추진대책	122,522	165,924	214,301	91,779	74.9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3,755	15,255	19,518	5,763	41.9
	국가전략프로젝트(R&D)	5,700	5,700	8,230	2,530	44.4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8,056	8,056	16,087	8,031	99.7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2,309	2,309	3,614	1,305	56.5
	야생동물침입단연구사업(R&D)	925	925	1,948	1,023	110.6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467	467	1,075	608	130.2
	환경산업육성융자(융자)	2,571	2,571	3,384	813	31.6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개발사업(R&D)	20,253	20,253	26,913	6,660	32.9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R&D)(환경부)	495	495	1,339	844	170.5
	환경개선자금(융자)	3,682	3,682	4,787	1,105	30.0
	화학사고 사전예방 제도 운영	717	717	996	279	38.9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R&D)	1,769	1,769	2,421	652	36.9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정보화)	1,140	1,140	1,990	850	74.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2,125	2,125	3,181	1,056	49.7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 운영(정보화)	53	53	181	128	241.5
	화학물질안전 교육훈련장 운영기반 조성	7,086	7,086	10,090	3,004	42.4
지역발전 특별회계 (4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313,590	313,590	376,865	63,275	20.2
	노후상수도정비(생활)	51,206	51,206	98,536	47,330	92.4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8,568	8,568	12,984	4,416	51.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1,750	1,750	2,747	997	57.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64,274	288,184	352,279	88,005	33.3
합 계		892,723	976,560	1,263,189	370,466	1,871.9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거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 저감사업 강화, ② 자연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③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④ 기초시설 투자 예산을 조정하여 환경예산 내실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이에 따른 2018년 환경부 예산안의 특징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환경현안인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을 위하여 대기부문 등의 예산을 증액시킨데 그 특징이 있다.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18년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도시침수 대응,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중 2017년 집행실적이 10% 이하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과 2018년 예산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8년 실제 보급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산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전기자동차의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균등 지원되는 구매보조방식을 제조업체의 가격인하와 성능개선 유도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차등지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개선추진대책의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2017년 추경을 통해 확대된 재원 물량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이를 감안한 2018년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내에 건립될 밀수 등 불법유통으로 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은 불법거래 적발지역과의 거리, 국내 복원대상 멸종위기종에 대한 감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은 2015~2017년간 한국과 중국기업간 프로젝트 체결건수가 5건에 불과하여 사업비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방식 및 장애요인 등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예산조정 등 하수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국가는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746억원(13.0%)이 감액된 1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하수관로정비	817,677	735,455	782,743	637,424	△145,319	△18.6
하수관로정비(지특, 세종)	17,917	17,820	17,820	18,840	1,020	5.7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344,273	351,536	351,536	332,043	△19,493	△5.5
도시침수대응	202,543	178,700	178,700	144,634	△34,066	△19.1
하수처리장 확충	336,874	253,701	253,701	262,341	8,640	3.4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농특)	93,638	100,980	100,980	77,841	△23,139	△22.9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08,073	330,200	341,893	293,100	△48,793	△14.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지특, 세종)	2,759	2,955	2,955	3,186	231	7.8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특, 제주)	3,835	3,000	3,000	2,700	△300	△10.0
하수도용자원리금 상환	43,527	28,957	28,957	20,255	△8,702	△30.1
하수처리수 재이용	22,353	32,097	47,122	42,454	△4,668	△9.9
계	2,193,469	2,035,401	2,109,407	1,834,818	△274,589	△13.0

자료: 환경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1990년 37.8%에 머물던 하수도 보급률이 2015년에는 92.9% 이르고 있다. 또한 단순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하수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서 홍수 시 우수의 조기 배출을 통한 도시침수 예방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가뭄대응 등 하수도의 기능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의 양적·질적 발전과정에서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도·농간 격차,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지체,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 부진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1-1.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가. 현황

하수도시설 확충¹⁾, 하수관로 정비²⁾,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³⁾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수처리장 확충 10~80%, 하수관로 정비 신설 30~70% 교체·개보수 20~5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신설 70% 개량 30%)해 주는 사업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1991년과 1993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고를 계기로 1990년 대부터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들 하수도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투자의 결과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2.9%, 하수관로 보급률은 79.9%에 이르고 있다.

[하수도 및 하수관로 보급률(2015년)]

(단위: %)

구분	2015년 하수도 보급률					2015년 하수관로 보급률				
	전체	시지역	군지역			전체	시지역	군지역		
			전체	읍	면			전체	읍	면
총계	92.9	95.1	67.1	85.0	49.0	79.9	81.6	73.3	77.7	70.0
특·광역시	99.1	99.5	83.7	-	-	82.9	83.8	72.9	-	-
도지역	87.9	91.2	66.1	85.0	49.0	78.5	80.5	73.3	77.7	70.0

자료: 환경부

지난 20여 년간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하여 비록 전국 보급률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특히, 도·농간 심각한 보급률 격차가 나타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148-313

2)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147-301

3)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148-303

나고 있다. 즉, 2015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2.9%(특·광역시 99.1%)에 비하여 면지역은 49.0%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수관로의 경우에는 아직 전국 보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62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37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931억원 등 총 1조 1,92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포함된 사업 중 2017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사업의 예산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2018년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27개 계속사업과 55개 신규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03개 계속사업과 90개 신규사업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92개 계속사업과 97개 신규사업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에 2018년 계속사업으로 포함된 사업 중 2017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10% 이하인 사업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24개,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1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계속사업 중 2017년 집행실적이 10% 이하인 사업]

(단위: 개소, 백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계
사업수	13	24	31	68
2018년 예산안	17,151	34,581	21,111	73,113

주: 2017년 9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이렇게 집행실적이 1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은 대부분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민원, 설계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17년 중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주시 동지역 2단계 하수관로사업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7년 예산현액 30억 2,400만원 중 6억 1,5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중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지방의회의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 제시로 전년 이월액 5월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시 신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7년 예산현액 11억 5,200만원 중 5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안에 포함된 2017년 집행실적 10% 이하인 사업 중 연내 설계 완료 또는 착공이 어려워 사업비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 조정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1-2. 도시침수 대응

가. 현황

도시침수대응사업⁴⁾은 하수범람으로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의 설치를 국고로 보조(30~70%)해 주는 사업이다.

집중 호우 시 도시침수 피해는 도시 인근 하천의 범람에 의한 것(외수침수)과 하천의 범람이 아닌 도시 자체의 빗물배제능력 부족에 의한 것(내수침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수침수에 의한 도시침수 피해 증가는 우수처리에 중심을 둔 현행 하수관리체계가 홍수피해 예방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 빗물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과 9월 청주시, 인천시, 부산시에 재산피해 308억원을 발생시킨 도시침수 피해의 경우에도 시간당 강수량 대비 하수관로의 시간당 우수관통용량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147-348

[2017년 7월 및 9월 도시침수피해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청주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발생일시	2017.07.16	2017.07.23	2017.09.11
강수량	시간최대 : 90mm/hr (일강우 : 290mm/d)	시간최대 : 97mm/hr (일강우 : 119mm/d)	시간최대 : 116mm/hr (일강우 : 358mm/d)
기준 관통수능	75.5mm/hr 미만 (10년 빈도)	68.06mm/hr 미만 (10년 빈도)	77.9mm/hr 미만 (10년 빈도)
피해지역	우암동, 내역동, 남주동, 비하동 등	서구, 동구, 부평구 등	진구, 사상구, 동래구, 강서구 등
피해금액	244	28	36
피해가구	4,290	3,662	2,603
피해원인	하천수 상승, 저지대, 하수관로 통수능력 부족 등	저지대, 하수관로 통수 능력 부족 등	저지대, 하수관로 통수 능력 부족 등

자료: 환경부

정부는 빗물관리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27개 계속사업과 10개 신규 사업을 위하여 1,44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2018년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예산조정 등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개선이 요구된다.

도시침수대응사업은 특히 빗물관리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 하수도사업에서 분리되어 201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5~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이 각각 75%, 63.7%, 66.2%로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침수대응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	242,416	242,416	242,416	22,841	265,257	198,985	66,184	88	75.0
2016	202,543	202,543	202,543	66,184	268,727	171,066	88,863	8,797	63.7
2017. 9	178,700	152,956	152,956	88,863	241,819	160,058	-	-	66.2

자료: 환경부

2017년 사업 중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27개 사업의 2017년 집행실적을 보면 66.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7. 9	130,763	114,715	114,715	45,833	160,548	107,475	-	-	66.9

자료: 환경부

특히, 2018년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27개 사업 중 여수시와 완도군 2개 사업은 공법 변경 검토, 계약관련 소송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어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2018년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중 2017년 집행실적이 10% 이하인 사업은 2017년 사업추진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2018년 공사비 규모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조정 등의 집행실적 제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3.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 현황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장 장내 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7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전국적 가뭄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국지적·지역적 가뭄발생 빈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및 비상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증가 그리고 생활분야와 공업분야에 있어서 지역적 제한 급수 및 운반급수 실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뭄 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억원,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용수	지역	경기, 충남	전남, 경남·북	경기, 강원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국
	국고지원액	595	145	125	1,098	369
생활용수	지역	도서·산간	도서·산간	도서·산간	도서·산간, 충남 서부	도서·산간
	피해인구	7,572	44,250	20,339	134,488	22,256

자료: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

정부는 이러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물 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5.8억톤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수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2018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 가뭄피해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추경예산 대비 9.9% 감액된 42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특히,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의 이용실적이 부진하여 수요량 확보 등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 내 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수 등 장내 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장외 용수로 활용되는데, 2015년 재이용량 10억 2,745톤은 장내 용수로 5억 3,138억톤 그리고 장외 용수로 4억 9,607억톤으로 각각 활용되었다.

2013~201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을 보면 생산량 대비 재이용량이 각각 12.6%, 13.5%, 14.7% 일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단위: 천톤/년, %)

	하수처리수 생산량(A)	재이용량(B)	재이용률(B/A)
2013	7,186,770	907,443	12.6
2014	6,997,534	942,880	13.5
2015	7,005,179	1,027,456	14.7

자료: 환경부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물이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 하수처리수재이용 목표량 특히 장외 용수 재이용 목표량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물재이용량 목표량은 14억 9,200톤인데, 실제 재이용량은 2015년 기준 68.8%에 해당하는 10억 2,700톤에 머물고 있으며 장외 용수의 경우 목표량은 10억 9,000톤인데 실제 사용량은 45.5%에 해당하는 4억 9,600톤이다.

장외용수 재이용 실적부진의 원인은 농업용수의 경우 계절적으로 한시적 이용에 따른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공업용수의 경우 국토교통부 광역 공업용수 공급과의 중복문제 발생에 따른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생산가격, 판매가격, 제공되는 용수의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수처리수의 수요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수 목표량 대비 실제 재이용 실적]

(단위: 억톤/년, %)

		1단계	2단계	3단계
		2012	2016	2020
전 체 재이용	계획	9.06	14.92	19.78
	실적	8.72	10.27	-
	달성률	96.2	68.8	-
장 외 재이용	계획	5.04	10.9	15.77
	실적	4.35	4.96	-
	달성률	86.2	45.5	-

자료: 환경부

둘째, 일부 지연되는 사업의 2018년 예산 조정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시지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2015~2017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43.2%, 61.1%, 87.2%로 나타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	27,281	25,090	25,090	9,817	34,907	15,068	19,822	17	43.2
2016	22,353	22,353	22,353	19,822	42,175	25,790	16,205	180	61.1
2017.9	47,122	42,136	42,136	16,205	58,341	50,873	-	-	87.2

자료: 환경부

이 중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10개 사업의 2017년 집행실적을 보면 71.6%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7. 9	12,237	8,890	8,890	15,334	24,224	17,345			71.6

자료: 환경부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사업의 2017년 9월말 집행실적을 개별 사업별로 보면, 천안시 병천, 용인시 영덕 재이용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1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아산시	2017	500	500	-	500	242	-	-	48.4	
예산군	2017	500	500	500	1,000	500	60	-	12.0	
천안시	2017	500	500	-	500	-	-	-	0.0	
구미시	2016	13,817	13,817	9,804	23,711	12,452	11,249	-	52.5	
	2017	8,365	5,752	11,259	17,011	16,000	-	-	91.7	
양산시	2017	280	138	-	138	138	-	-	100.0	
울산시	2017	500	500	-	500	500	-	-	100.0	
용인시	2016	1,073	1,073	-	1,073	-	1,073	-	0.0	
	2017	-	-	1,073	54	-	-	-	5.0	
오산시	2016	1,000	1,000	2,533	3,533	531	3,002	-	15.0	
	2017	-	-	3,002	3,002	443	-	-	14.8	
김포시	2017	500	500	-	500	132	-	-	26.4	
화성시	2017	500	500	-	500	175	-	-	35.0	

자료: 환경부

예를 들어, 용인시 재이용사업은 2016~2018년간 총사업비 31억원(국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위치(민간부지) 변경에 따른 법률검토 및 채원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 병천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 후 채용협의를 지연되고 있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중 2017년 집행실적이 10% 미만인 사업은 2017년 사업 추진상황과 2018년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예산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방식 개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소량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8년 동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441억원이 증가한 4,04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2,844	264,274	288,184	352,279	64,095	22.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46,392	52,492	52,492	32,490	△20,002	△38.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8,365	18,575	18,575	18,585	10	0.05
계	267,601	335,341	359,251	404,335	44,103	12.3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질산화물의 경우 31.6% 그리고 미세먼지는 1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량 비중]

(단위: 톤/년, %)

구분	질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부유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총 배출량(A)	1,144,508	343,241	211,172	91,460	992,256
도로이동오염원(B)	361,230	183	10,019	9,218	49,468
비중(B/A)	31.6	0.1	4.7	10.1	5.0

자료: 환경부

특히, 이러한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 총배출량 중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의한 기여율]

(단위: 톤/년, %)

	부유먼지 (PM ₁₀)	미세먼지 (PM _{2.5})	질산화물 (NO _x)	황산화물 (SO _x)
경유차	9,990	9,190	321,732	106
휘발유차	30	27	22,961	60
계(A)	10,019	9,218	344,693	167
총배출량(B)	211,172	91,460	1,144,508	343,241
비중(A/B)	4.7	10.1	30.1	0.05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을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이들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¹⁾

1)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수송부문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동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하고 대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2-1. 기존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저조원인을 감안한 2018년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²⁾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의 경우 구매 시 대당 1,400만원 그리고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을 정액으로 보조하고, 충전기 설치비의 경우에는 완속충전기는 대당 300만원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대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기자동차 20,000대, 전기버스 150대, 완속충전기 12,000기, 급속충전기 1,070기 보급을 위하여 3,44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대, 기)

	보급물량	단가	예산안
전기자동차	17,143	14	240,000
전기버스	150	100	15,000
완속충전기	12,000	3	36,005
급속충전기	1,070	50	53,500
계	-	-	344,505

자료: 환경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³⁾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동 차량의 구매 시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대당 50만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대당 50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데, 2018년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60,000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300대 구매지원을 위하여 31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2) 코드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1

3) 코드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2

[2018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대)

	보급물량	단가	예산안
하이브리드자동차	60,000	0.5	30,0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300	5	1,500
계	-	-	31,500

자료: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⁴⁾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과 수소충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소연료전지차는 대당 2,750만원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기당 15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수소연료전지차 130대 구매보조 및 충전소 10기 설치지원을 위하여 18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2018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 및 충전소 설치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대)

	보급물량	단가	예산안
수소연료전지차	130	27.5	3,585
수소충전소	10	3,000	15,000
계	-	-	18,585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2018년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감안한 2018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작업체의 연간 전기자동차 출고물량 제약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대량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충전기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2015~2017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을 보면, 실제 보급물량이 당초 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물량의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코드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1-303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단위: 대)

	보급 계획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 증가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2015	3,000	117	0	3,117	2,907	808
2016	8,000	808	2,100	10,908	5,914	5,518
2017.8	14,100	5,518	0	19,618	7,255	

자료: 환경부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예산의 집행실적도 부진하여 2015년 65.2%, 2016년 40.2%, 2017년 8월까지 39.6%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5	51,786	51,786	51,786	2,265	54,050	35,225	16,115	2,710	65.2
2016	148,294	148,294	148,294	16,115	164,409	66,119	84,390	13,900	40.2
2017.8	206,000	171,384	171,384	84,390	255,774	101,161	-	-	39.6

자료: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저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신청대수 대비 제작업체의 연간 출고 가능물량 제약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9,052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기준 5,914대이고 나머지 계약건수는 출고가 이월되었고, 2017년의 경우 8월까지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6,659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기준 7,255대에 그치고 있다.

[전기자동차 연간 생산 및 공급현황]

(단위: 대/년)

구분	계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기타
생산계획	18,150	8,000	7,000	2,000	650	500
'17.8월까지 계약	16,659	10,251	2,094	1,028	1,469	1,817
'17.8월까지 출고	7,255	4,641	904	970	392	348

자료: 환경부

한편 2015~2017년간 완속 및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완속충전기 보급의 경우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하여 총 보급계획물량은 1만 6,333대인데 실제 설치가 이루어진 것은 5,427대에 불과하다. 급속충전기의 경우에도 2017년 보급계획물량이 전년 이월물량과 추경예산 물량을 합하여 총 1,256대인데 8월 현재 200대만 보급된 상황이다.

완속 및 급속충전기의 보급실적 저조는 비공용의 경우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인용 충전기의 설치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이고, 공용 충전기의 경우는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충전기 제작사와의 계약, 현장조사, 실시설계 등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자동차 완속 및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단위: 기)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 이월물량	추경 증가물량	총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다음연도 이월 물량
[완속충전기]						
2015	2,940	242	0	3,182	2,432	705
2016	7,900	705	2,100	10,705	3,108	6,818
2017.8	9,515	6,818	0	16,333	5,427	-
[급속충전기]						
2015	100	0	0	100	100	0
2016	150	0	180	330	150	180
2017.8	530	180	546	1,256	200	-

자료: 환경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15~2017년간 완속 및 급속충전기 구축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완속충전기의 경우 2015년 69.0%, 2016년 28.0%, 2017년 8월까지 54.9% 그리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 2015년 82.7%, 2016년 56.7%, 2017년 8월까지 24.0%이다.

[완속 및 급속충전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완속충전기]									
2015	18,894	18,894	18,894	1,682	20,576	14,191	4,231	2,154	69.0
2016	39,926	39,926	39,926	4,231	44,157	12,344	27,232	4,581	28.0
2017.8	28,550	26,209	26,209	27,232	53,441	29,359	-	-	54.9
[급속충전기]									
2015	7,560	7,560	7,560	2,224	9,784	8,091	1,504	189	82.7
2016	23,660	23,660	23,660	1,504	25,164	20,664	11,726	4,500	56.7
2017.8	42,200	28,650	28,650	11,726	40,376	9,700	-	-	24.0

자료: 환경부

둘째, 구매 수요부족 등에 의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15~2017년간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급실적을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하여 플러그인 자동차의 보급실적이 현저히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16년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총 보급계획 물량 3,000대 중 175대만 그리고 2017년에는 9월까지 총 보급계획 물량 955대 중 408대만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현황]

(단위: 대)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 이월 물량	추경 증가물량	총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다음연도 이월 물량
[하이브리드]						
2015	30,000	-	-	30,000	14,891	-
2016	30,400	-	-	30,400	37,034	-
2017.9	50,000	-	-	50,000	26,788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5	-	-	-	-	127	-
2016	3,000	-	-	3,000	175	655
2017.9	300	655	-	955	408	-

자료: 환경부

이로 인하여 플러그인 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의 2015~2017년간 집행실적이 2016년의 경우에는 5.8%, 2017년 9월 현재에는 42.7%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플러그인 자동차 구매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자							비고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	-	-	-	-	-	635	-	-	-	하이브리드차 예산에서 집행
2016	15,000	15,000	15,000	-	15,000	875	3,278	7,491	5.8	3,356백만원은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으로 집행
2017.9	1,500	1,500	1,500	3,278	4,778	2,040	-	-	42.7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의하면 이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저조는 1회 충전 후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km에 불과하고 완속충전만 가능한데 전기자동차와 달리 완속충전기는 보조가 되지 않아 구매 수요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높은 차량 가격, 제한된 차종, 고가의 충전소 설치비, 충전소 설치에 있어 지역적 제약 등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15~2017년간 수소연료차의 보급실적을 보면 총 보급계획물량 대비 실제 보급 실적이 부진하여 지속적으로 이월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현황]

(단위: 대)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 이월 물량	추경 증가물량	총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다음연도 이월 물량
2015	71	21	-	98	41	35
2016	71	35	-	106	73	14
2017.9	130	14	-	144	48	-

자료: 환경부

이러한 보급실적 부진은 동등의 내연차량과 가격차이(5,500만원) 및 제한된 차종(1개 차종)으로 구매수요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행에 있어서도 충전요금에 대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해 대부분의 충전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충전요금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2013~2017년간 보급된 수소연료전지차의 지역간 분포를 보면 대부분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⁵⁾

[보급된 수소연료전지차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수소연료전지차					
	계	'13	'14	'15	'16	'17.8
계	174	5	7	41	73	48
서울	12	-	-	6	6	-
부산	-	-	-	-	-	-
대구	3	-	-	2	1	-
인천	3	-	-	-	3	-
광주	46	5	-	4	20	17
대전	1	-	-	-	1	-
울산	39	-	7	1	17	14
세종	-	-	-	-	-	-
경기	4	-	-	4	-	-
충남	25	-	-	21	2	2
전북	1	-	-	-	-	1
경북	1	-	-	1	-	-
경남	39	-	-	2	23	14

자료: 환경부

이상과 같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과 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때, 2018년 이들 자동차 보급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부생수소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 대부분 정유공장에서 증질유개질 및 연료 등으로 자체 소모하고 있다.

2-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검토 필요

가. 현황

현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는 차량가격, 성능, 대기오염 배출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액의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세제감면 등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지원방식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이 비교적 단순한 것에 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 1,400만원과 전기버스 1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미국과 일본은 배터리 용량, 영국과 프랑스는 CO₂ 배출량, 중국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 가격 대비 구매보조금 비율에 있어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세제감면을 합쳐서 구매보조의 비율이 세계 적용전 차량가격의 15~1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7%에 이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세계혜택 적용전 가격 (부가세 포함)		48,760	48,825	29,311	41,365	40,034
세계 혜택	세제감면	2,860	3,406	714	-	-
	세금환급	-	-	-	-	-
	소계	2,680	3,406	714	0	0
구매 보조금	중앙정부	14,000	3,392	2,693	6,488	3,709
	지방정부	6,000	1,696	1,530	-	2,472
	소계	20,000	5,088	4,223	6,488	6,181
세계 및 보조금 합계		22,860	8,494	4,937	6,488	6,181
실제 구매가격		25,900	40,331	24,374	34,877	33,853
구매지원 보조율		46.9	17.4	16.8	15.7	15.4

자료: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생산성본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 2017. 6.

셋째,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지급 종료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그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별로 전기자동차 20만대 판매 시까지 그리고 영국은 2020년까지로 구매보조금 지급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0년 또는 전기자동차 40만대 판매 시 그리고 중국은 단계별 축소로 지급기한을 한정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구매 보조	지급여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급방식	차등지급	차등지급	균등지급	균등지급	차등지급	차등지급	
	지급기준	배터리용량	CO2배출량	CO2배출량	EV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배터리용량	
	국 비 보 조 금	합 계		구매비35% 2500~4300£	6,000€	4,000€	최대60万円	2~4.4万円 최대30万円 최대15万円
		지 방 비	\$750~3,000	없음	없음	※제조사 보조(50%)	2~15万円	정부 50%
		합 계	\$750~3,000	2500~4300£	6,000€	4,000€	62~75万円	3~6.6万円 최대45万円 최대25万円
차량상한	없음	60,000£	없음	60,000€	없음	없음		
세계 혜택	혜택여부	최대\$7,500 소득세환급 (연소득 \$54,600이상)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취등록세	-	등록세 면제	등록세 면제	-	취득세 감면 중량세 감면	구매세 면제 (17.12종료)	
	보유세	-	보유세 면제	법인자동차세 면제	보유세 면제 법인자동차세	구입이후 2년간 50%감면	-	
지급시한	20만대 판매 (제조사별)	2020년	없음	40만대 판매 (2020년)	없음	단계별 축소		

자료: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생산성본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 2017. 6.

나. 분석의견

제조업체의 가격인하와 성능개선 유도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방식의 개선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차량간 균등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와 세제감면 그리고 차량가격 대비 높은 비율의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사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타 선진국이 전기자동차 세전 판매가격의 15~17%를 지원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7%에 해당하는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차종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현황을 보면 승용차에 비하여 화물차, 버스, 승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전기화물차나 버스,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 등 차량크기에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고 있어 대기개선 효과를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이 되고 있다.

[차종별 대기오염 발생 현황]

(단위: 톤)

	질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부유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휘발성유기 화합물 (VOCs)
승용차	34,036 (9.4%)	63 (34.6%)	81 (0.8%)	75 (0.8%)	18,045 (36.5%)
택시	487 (0.1%)	5 (2.7%)	- (0.0%)	- (0.0%)	89 (0.2%)
승합차	15,346 (4.2%)	5 (2.6%)	435 (4.3%)	400 (4.3%)	632 (1.3%)
버스	31,365 (8.7%)	9 (4.6%)	223 (2.2%)	205 (2.2%)	12,134 (24.5%)
화물차	204,086 (56.5%)	69 (37.8%)	6,839 (68.3%)	6,292 (68.3%)	11,436 (23.1%)
특수차	2,482 (0.7%)	2 (0.9%)	74 (0.7%)	68 (0.7%)	266 (0.5%)

(단위: 톤)

	질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부유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휘발성유기 화합물 (VOCs)
R V	70,509	23	2,367	2,178	2,610
	(19.5%)	(12.5%)	(23.6%)	(23.6%)	(5.3%)
이륜차	2,919	8	-	-	4,255
	(0.8%)	(4.3%)	(0.0%)	(0.0%)	(8.6%)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합계	361,230	183	10,019	9,218	49,468
	(100%)	(100%)	(100%)	(100%)	(100%)

자료: 환경부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조사의 가격인하 및 기술혁신 유도, 대기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로 구매보조금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용자금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현황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¹⁾는 주요 수계 내에서의 녹조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국고(보조 30%와 용자 5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44억 1,600만원 증액된 129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211	8,568	8,568	12,984	4,416	51.5

자료: 환경부

2018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내용을 개별사업별로 보면 광주시 용자금 49억 8,400만원 그리고 경산시 용자금 18억 6,200만원 및 보조금 6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2018년도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내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집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1131-301

2018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역사업 중 광주시 사업은 2013~2018년간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금 및 용자금을 포함하여 국고 125억 6,000만원(보조 47억 1,000만원, 용자 78억 5,000만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2016년간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나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이미 교부된 보조금 예산 47억 1,000만원 중 26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용자금은 7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2017년의 경우 용자금 2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광주시가 용자금 대신 자체 지방비를 활용할 계획을 밝혀 전액 불용될 예정이다.

[광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3	보조	600	600	600	0	600	0	600	0
	용자	0	0	0	0	0	0	0	0
2014	보조	2,018	2,018	2,018	600	2,618	575	2,043	0
	용자	3,362	0	0	0	0	0	0	0
2015	보조	1,464	1,464	1,464	2,043	3,507	247	3,260	0
	용자	3,142	0	0	0	0	0	0	0
2016	보조	628	628	628	3,260	3,888	1,798	2,090	0
	용자	1,346	0	0	0	0	0	0	0
2017	보조	0	0		2,090	2,090	466	-	-
	용자	2,866	0	0	0	0	0	-	-

자료: 환경부

이러한 광주시의 사업추진 지연 및 용자금 예산의 계속된 불용에도 2018년 예산안에는 용자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8년에 편성된 용자지원 예산 대신 자체 지방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별 내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집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비점오염(non-point pollutant source)저감사업¹⁾은 도시,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7,400만원이 감액된 48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비점오염저감사업	66,193	54,684	54,684	48,110	△6,574	△12.0

자료: 환경부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 31개소(459억원)와 신규 사업 11개소(22억원)에 대해 국고 481억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나. 분석의견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2017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는 도시, 도로, 농촌지역 등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저감하기 위하여 이들 발생원과 거리가 먼 하천 하류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먼 거리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 발생량 대비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의한 삭감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230-302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점오염 발생원과 거리가 먼 하천이 아니라 실제 발생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기법을 활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그린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17년 9월까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60.1%, 2016년 67.5%, 2017년 9월까지 56.3%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	54,152	53,263	21,858	75,121	45,147	29,194	1,867	60.1
2016	58,818	57,393	29,194	86,587	58,440	27,257	890	67.5
2017.9	54,684	32,283	27,257	59,540	33,507	-	-	56.3

자료: 환경부

또한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30개의 2017년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66.1%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사업의 2017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7.9	39,193	22,011	22,011	8,715	30,726	20,306	-	-	66.1

자료: 환경부

이 중 특히 4개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10% 이하인데 2018년 예산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성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토지매입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7년 예산 34억 5,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년 이월액 7,500만원 중 5,800만원이 집행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17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실적이 10% 이하인 사업은

2017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적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말 현재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10% 이하의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공지천	3,000	2,558	2,558	959	3,517	18	-	-
음성군	3,450	0	0	75	75	58	-	-
보성군	1,626	1,577	1,577	166	1,743	182	-	-
옥천군	725	0	0	305	305	59	-	-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¹⁾은 산업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56억 600만원이 감액된 77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150,143	133,600	133,600	77,994	△55,606	△41.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49,953	117,500	117,500	76,614	△40,886	△34.8
국가소유 노후폐수관로 개량	-	-	-	980	순증	순증

자료: 환경부

2018년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44개 계속사업 공사비와 17개 신규 사업 설계 및 착공비 지원(776억원), 국가 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여수·달성산업단지 내 노후폐수관로 36km에 대한 CCTV 조사 및 대장도 작성지원(9억 8,000만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232-302

나. 분석의견

집행이 저조한 사업 예산의 일부 조정과 국가소유 산업단지의 노후폐수관로 개량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7년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연도 말 사업비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4개 사업은 2017년 집행상황 및 내년도 예산 집행가능성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사업비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면, 구미, 영천, 괴산, 음성의 4개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자금부족과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도 말 이들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시킬 계획에 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집행실적이 10% 미만으로 2017년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이들 4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유지시켜 사업의 부진사유 해소 시 다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연 원인 및 해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 구미, 영천, 괴산, 음성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		보조사업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구미하이테크	3,100	-	-	-	-	-	-	-
영천고경	100	-	-	-	-	-	-	-
괴산첨단	1,280	-	-	205	-	-	-	-
음성신천보부	500	-	-	-	-	-	-	-

자료: 환경부

둘째, 국가 소유 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및 지원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5년 국가소유 산업단지 내의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불량률이 평

균 49%에 달하여 폐수 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2차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노후 폐수관로 개량사업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8년에는 먼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6개 국가산업단지 중 우선 여수와 달성 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폐수관로 36km에 대한 CCTV조사와 대장도 작성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소유 노후폐수관로 개량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안)]

- 총사업비: 540억원
- 사업기간: 2018~2022년
- 사업규모: 여수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18.1km
- 사업형태: 직접, 국비 100%
- 사업내용: 노후된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및 처리시설)개량

자료: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 법은 원칙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폐수 발생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2)3)4)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는 공공폐수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리시설 건설의 경우 건설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1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수도권 50%과 그밖의 지역 70%의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다.⁵⁾⁶⁾

하지만 국가 소유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노후 폐수관로의 개량사업은 이미 설치된 시설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 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치 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대로 입주업체의 사용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8년 민간대행비는 CCTV조사와 대장도 작성 등 실태조사에 한정하고, 향후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본 보조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가. 현황

재활용시설 설치¹⁾의 내역사업인 건식설비 습식전환 공정개선은 폐비닐을 선별·압축하는 건식공정을 흡 등의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간이습식공정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활용시설 설치	6,986	7,011	7,011	7,011	0	0
건식설비 습식전환 공정개선	3,035	3,150	3,150	3,15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사업지연 및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예산안의 적정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예산안은 의령, 봉화, 대구의 재활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기존 폐비닐을 선별·압축하는 건식공정을 흡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간이습식공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2017~2019년간 이들 3개 지역의 각 시설별로 51억원씩 총 153억원을 투자하여 동시에 간이습식공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2017년 예산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9

[당초 의령, 봉화, 대구 간이습식공전전환사업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총공사비
의령	1,050	2,450	1,600	5,100
봉화	1,050	2,450	1,600	5,100
대구	1,050	2,450	1,600	5,100
계	3,150	7,350	4,800	15,300

자료: 환경부

하지만 2017년 8월 현재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의령군의 경우 비록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었으나 하수처리장과 폐수연계처리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11월에 착공 예정이고 봉화군과 대구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서 의령군 시설을 우선 201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 지원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다.

[변경된 의령, 봉화, 대구 간이습식공전전환사업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총공사비
의령	2,900	2,200	-	5,100
봉화	250	700	4,150	5,100
대구	-	250	4,850	5,100
계	3,150	3,150	9,000	15,300

자료: 환경부

또한 대구시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영농폐비닐을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²⁾ 대상품목으로 지정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폐비닐 발생량 감소로 대구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구시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는 물론 사용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가. 현황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운행 중인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60억원이 증액된 1,65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바꿀 시 어린이 통학용 중고 경유차 가격을 고려하여 LPG 신차 구입비 중 500만원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개선추진대책	112,813	122,522	165,924	214,301	48,377	29.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3,822	74,031	109,433	165,391	55,958	51.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	2,000	4,516	2,516	125.8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17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적정 사업비 규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LPG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운행 중인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업이 추경예산을 통

하여 증가한 사업물량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적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공해(LPG) 엔진개조의 경우 보급물량 287대 중 2017년 9월 현재 보급된 것은 없으며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보급물량 482대 중 124대만이 보급되었다. 또한 건설기계 저감장치 보급물량 989대 중 485대만이 보급되었으며, 건설기계 엔진개조 보급물량 1,010대 중 386대만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보급물량 800대 중 2017년 9월 현재 보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추경 추가분	환경부 집행금액 (‘17.9월기준,추경포함)	지자체실집행액 (‘17.9월 기준)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74,031	35,402	104,981	74,066
- 조기폐차	48,240	18,612	66,852	52,969
	60,000대	23,149대	83,149대	73,635대
- 저감장치(DPF) 부착	22,212	2,501	20,261	14,480
	14,993대	1,688대	13,676대	6,602대
- 저공해(LPG)엔진 개조	-	499	499	-
	-	287대	287대	-
- PM·NOx동시저감장치	450	3,165	3,615	918
	60대	422대	482대	124대
- 건설기계 DPF 부착	170	4,775	4,945	2,381
	34대	955대	989대	485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1,725	5,850	7,575	2,843
	230대	780대	1,010대	386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1,234	-	1,234	475
	카메라66개	-	카메라66개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2,500	2,500	-
	-	800대	800대	-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2017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2018년 예산안에는 저공해(LPG) 엔진개조 500대,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3,00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1,895대, 건설기계 엔진개조 1,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800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사업의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2018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운영¹⁾의 내역사업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는 동 센터 내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에 의해 그 거래가 제한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밀수 등 불법 거래에 의해 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신규로 추진될 동 사업의 예산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계비 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운영	26,286	17,965	17,965	4,094	△13,871	△77.2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	-	-	238	순증	순증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불법거래 적발지역과의 거리, 국내 복원대상 멸종위기종에 대한 감염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7월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35,640종의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고 국제적 거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4-327

이러한 협약을 위반하여 2014~2016년간 밀수 등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거래한 현황을 보면, 주로 한강유역관리청 관리영역인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 21건, 2015년 31건, 그리고 2016년 118건으로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적발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	새만금
계	170	106	12	20	7	7	14	4
'14	21	7	4	2	2	1	5	-
'15	31	17	6	1	2	3	2	-
'16	118	82	2	17	3	3	7	4

자료: 환경부

이렇게 적발되어 몰수된 국제멸종위기종은 원산지 국가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송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 국립생태원의 검역을 거쳐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하거나 몰수를 보류하여 본 소유주가 임시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처리 현황]

(단위: 마리)

	품명	수량	대상종 처리결과
2014	사막여우	22	검역본부 검역과정 중 폐사(6마리), 국립생태원 인계(16마리)
2014	사막여우	10	검역본부 검역과정 중 폐사(9마리), 폐사상태 적발(1마리)
2014	거북(노던 다이아몬드백 테라핀)	9	폐사상태 적발
2014	검은술 마모셋 원숭이	1	국립생태원 인계
	비단 마모셋 원숭이	3	국립생태원 인계
2016	비단 마모셋 원숭이	2	고양경찰서 적발, 국립생태원 인계

자료: 환경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북 영양에 건립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압수된 국제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2018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동센터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2014~2016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적발건수의 62.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발지에서 거리가 먼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송거리로 인하여 이송 시 폐사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둘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국내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검역되지 않은 외래 멸종위기종이 같은 지역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감염 발생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외래 감염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의 설치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생태탐방연수원과 에코촌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¹⁾의 내역사업인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운영은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탐방연수원, 생태관광센터, 환경친화적 에코촌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억 1,800만원이 감액된 12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2,085	16,420	16,420	14,982	△1,438	△8.8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운영	20,380	14,700	14,700	12,082	△2,618	△17.8

자료: 환경부

2018년 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개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 2개 신규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을 위한 신규 1개와 계속 1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7,830), 무등산생태탐방연수원(994), 한려해상생태탐방연수원(708)
생태관광센터 조성	밀양 생태관광센터(500), 서귀포 생태관광센터(800)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제주 에코촌(1,000), 남해 에코촌(250)

자료: 환경부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9-302

나. 분석의견

생태관광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생태탐방연수원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과 내년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국립공원 내에 생태탐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무등산, 한려해상,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이다.

2014~2017년간 이들 3개 국립공원에 있어서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공사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용지보상, 건축허가 등) 협의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공사 실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토지수용결정이 2017년 10월 이루어져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무등산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2017년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2017년 사업비 집행상황 및 이월액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연도중 이들 3개 생태탐방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무등산, 한려해상,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무등산]								
2014	500	500	500	-	500	302	198	-
2015	3,450	3,450	3,450	198	3,648	265	3,383	-
2016	2,760	2,760	2,760	3,383	7,663	5,010	2,653	-
2017. 9	5,170	5,170	5,170	2,653	7,823	400	-	-
[한려해상]								
2014	800	800	800	-	800	284	516	-
2015	3,360	3,360	3,360	516	3,876	1,379	2,497	-
2016	2,050	2,050	2,050	2,497	6,777	4,728	2,049	-
2017. 9	5,530	5,530	5,530	2,049	7,579	-	-	-
[내장산]								
2015	500	500	500	-	500	498	2	-
2016	2,570	2,570	2,570	2	2,572	111	2,461	-
2017. 9	2,000	2,000	2,000	2,461	4,461	-	-	-

자료: 환경부

한편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관광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제주도 동백동산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18년에는 추가적으로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2015~2017년간 제주도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부지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고 부지가 확대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코촌 건축 및 토목 설계와 에코촌 공공건축물 건축협회가 지연되고 공공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부속시설에 대한 인중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제주 에코촌 조성사업 내용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사업비	○ 3,500백만원	○ 9,500백만원	조성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확장, 에너지 절감 설계·시공 반영
사업 내용	○ 2015. 1월 ~ 2017. 12월(3년간) ○ 토지매입 3,760㎡ ○ 숙박동(50명 수용), 에코치유센터, 관리동, 생태연못 등	○ 2015. 1월 ~ 2018. 12월(4년간) ○ 토지매입 18,192㎡ ○ 숙박동(116명 수용), 관리동,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태연못, 주차장, 진입로 등	

자료: 환경부

따라서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의 변경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5~2017년간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2018년 완공을 위하여 환경부 차원의 정례적 사업추진 실적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에 지연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시 친환경 에코촌 조성사업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5	500	500	500	500	0	500	500	0	0	100.0
2016	1,500	1,500	1,500	1,500	0	1,500	269	1,231	0	17.9
2017.9	500	500	500	500	1,231	1,731	560	-	-	32.4
계	2,500	2,500	2,500	2,500	1,231	3,731	1,329	1,231	-	35.6

자료: 환경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우제류 복원시설 설치사업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황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¹⁾의 내역사업인 우제류 복원시설 설치에 강원도 인제군에 산양 등 우제류의 구조·치료·방사시설을 2013~2018년간 79억원(국비 50%)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²⁾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우제류 복원시설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4,663	17,925	17,925	16,087	△1,838	△10.3
우제류 복원시설 조성	1,150	1,150	1,150	1,025	△125	△10.9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13~2017년간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특히 2017년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측량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2018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우제류 복원시설 조성사업은 산양, 사향노루, 대륙사슴 등 발굽동물을 구조·치료·복원하기 위하여 검역시설, 임시계류장, 수의시설, 증식 및 자연적응 훈련장과 교육·홍보·생태체험시설을 국립공원 관내의 인제군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3~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국립공원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4-302
- 2) 우제류는 산양, 사향노루, 대륙사슴 등 발굽동물을 의미한다.

있다. 즉, 2013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2016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7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에는 측량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중단되고 현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우제류 복원시설 조성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3	100	100	100	-	100	100	-	-	100.0
2014	-	-	-	-	-	-	-	-	-
2015	500	500	500	-	500	183	317	-	36.6
2016	1,150	1,150	1,150	317	1,467	249	1,218	-	17.0
2017.9	1,150	1,150	1,150	1,218	2,368	495	-	-	-

자료: 환경부

따라서 2017년 내에 공사의 재추진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2018년 공사완료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2018년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우제류 복원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입로 및 사업부지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가. 현황

AI대응 철새 정보네트워크 구축¹⁾의 내역사업인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사업은 국립생물자원관에 2017년 12월 소청도에 설치될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신규로 반영된 동 사업의 예산안은 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	-	-	1,098	1,098	순증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	-	-	631	631	순증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18년 신규로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근거가 미흡하여 이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철새 이동경로 및 철새 도래실태 등의 연구와 탐조를 활용한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용진국 소청도에 건립되는 시설로 201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준공에 따라 2018년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안에는 동 센터의 운영비 6억 3,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신설되는 국가철새연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44-313

즉, 국립생물관이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위탁형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소속기관화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직제 및 기본운영규정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진행 중인 행정자치부와의 직제협의를 지연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즉,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당초 국립생물자원관 내에 조직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조직신설이 아닌 인원 조정만을 고려하는 등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아직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7년 12월 국가철새연구센터 준공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와의 직제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립생물자원관과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기능 정비와 더불어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본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¹⁾은 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내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체련소 등에 한국기술을 적용한 집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는 양국 협력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0	0.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2015~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방식 및 장애요인 등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매년 한중 협력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으로 하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협상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정부 20%, 중국정부 20%, 중국업체 60%로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2015~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한중 기업간 프로젝트 계약 실적이 전무하고 2016년에는 계약실적이 5건에 그쳤으며 2017년에는 9월 현재 계약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사업비는 대부분 이월되었고 2016년에는 2015년 이월액만 집행되었으며 2017년 사업비는 이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6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5	10,000	10,000	0	10,000	334	9,666	0	3.3
2016	10,000	10,000	9,666	19,666	10,045	9,621	0	51.1
2017	10,000	10,000	9,621	19,621	357	-	-	

자료: 환경부

이러한 한·중기업간 프로젝트 계약실적 부진의 원인은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 전액 부담 또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분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한국측 20%, 중국측 정부와 기업 80%의 자금이 투입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와 협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동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기업간 계약실적이 저조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지와 수원지로서 한·중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해 양국간 그리고 양국 기업간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실적 저조와 한중 기업간 발생지와 수원지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방식 및 장애요인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2) 당초 동 사업은 2015~2016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추진되었다.

가. 현황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금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2013~2017년간 수도권매립지에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6,800만원이 증액된 8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30,863	43,130	43,532	50,029	6,988	16.0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	3,513	3,513	8,581	5,068	144.3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위탁 운영비는 수치상 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미흡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연구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2017년간 1,464억원을 지원하여 건립한 시설로 연구실, 전용실험실, 파일럿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동 연구단지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실증연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주 대상으로 각종 연구 및 실증시설을 임대 제공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950-302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제3항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 법 제13조의3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2017년부터 위탁운영비를 수지차 출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²⁾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지차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예산안(B)	중기계획			
			2019	2020	2021	2022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수지차 출연금(A-B)	3,350 (20개기업)	7,899 (50개기업)	9,836 (70개기업)	8,016 (100개기업)	6,151 (100개기업)	4,824 (100개기업)
지출예산(A)	3,513	8,581	11,526	12,566	11,810	11,056
수입예산(B)	163	682	1,690	4,550	5,659	6,232

자료: 환경부

동 수지차 출연금의 수입은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운영수수료를 통해 확보되고, 시설운영비, 시설관리비,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등에 활용되는데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3년간(2017~2019년)은 수수료의 50%를 면제하고 5년간 입주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의 수행, 공공목적의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출연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³⁾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제4항을 근거로 위탁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술원의 보다 명확하고 책임감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출연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의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가. 현 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¹⁾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4억 9,700만원 증가한 500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32,863	43,130	43,532	50,029	6,497	14.9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출예산에 편성된 폐수처리비가 실비로 정산되는 비용이므로, 수입예산에 동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환경기술평가수수료, 환경정책융자금 운영수수료,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이다.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예산안은 인건비(15억 6,500만원), 경상비(11억 8,000만원), 예비비(3억 8,200만원), 사업비(37억 7,200만원) 등의 지출예산에서 36억 7,000만원의 자체수입을 차감하며 500억 2,900만원을 책정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950-302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예산				자체수입	예산안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사업비		
15,065	1,180	382	37,072	3,670	50,029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8년 사업비 예산안 370억 7,200만원 중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²⁾ 지출예산이 81억 9,900만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시설운영비에는 폐수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동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 모집 시에 입주기업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9월 현재 조성된 연구단지 실험시설 인프라에 입주기업별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유량계가 미설치되어, 입주기업별로 폐수처리비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원은 입주기업별로 개별 폐수유량계를 설치하고 폐수처리비 부과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실비로 정산되는 폐수처리비용 8억 6,000만원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환경산업연구단지 지출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시설운영비			시설 관리비	지원 사업비	관리 인건비	기업 유치비	합계
종합시설운영	폐수처리시설관리	합계					
3,760	860	4,620	2196	825	324	234	8,199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년 6월 5일에 개소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총괄수행한다.

가.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출연사업¹⁾은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지속가능 소비생산 및 환경경영 지원 업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435억 3,200만원 대비 64억 9,700만원(14.9%)을 증액한 50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30,863	43,130	43,532	50,029	6,497	14.9
환경기술산업 육성	7,015	10,046	10,046	11,546	1,500	14.9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운영	0	0	0	1,500	0	순증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Green CTC)²⁾’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다.

전문무역상사는 중소·중견 기업의 신시장개척,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 제 8조의2³⁾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업·기관을 말한다.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역 및 물류회사, 금융회사, 전문법인(법무·관세·회계) 등 민간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문무역상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1950-302

2) 전문무역상사(Certified Trad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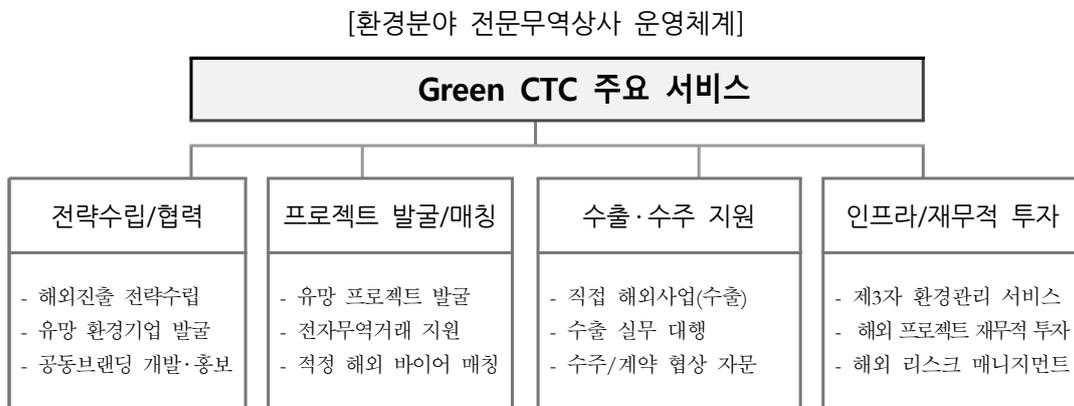
3) 「대외무역법」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위한 민간투자금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사업은 국내 환경전문기업이 수출실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출실적(레퍼런스)과 기업 인지도가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설립하여 환경전문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에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문무역상사 자본출자금 10억원과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검토, 민간출자금 60억원 마련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등에 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018년도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Green CTC 설립지원 출자금('18~'22)	1,000	- (등록자본금) 5,000백만원×20%=1,000백만원
Green CTC 설립비용 및 초기 기반구축	500	- CTC 설립관련 법률·세무 자문, 민간투자자 유치 - 환경분야 대표 수출 브랜드 개발 및 해외 홍보 - 초기 수출지원 기반 구축 운영비 등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위한 민간출자 투자금 유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문무역상사 자본금 규모를 총 1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8~2022년 동안 매년 10억원 규모로 총 50억원(45%)의 국고를 출자하고, 민간출자 투자금으로 60억원(55%)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민간출자 투자금 유치를 위해 관세·회계·법무법인, 무역회사, 물류회사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 기업의 투자 의향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민간출자자 구성 및 출자비율(안)]

구분	출자비율	2018년 출자금액	누적 출자금액(~2022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5%	10억원	50억원
관세법인	5%	1억원	5억원
회계법인	5%	1억원	5억원
법무법인	5%	1억원	5억원
무역회사	14%	3억원	15억원
물류회사	14%	3억원	15억원
금융회사	14%	3억원	15억원
계	100%	22억원	110억원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러나 2017년 9월까지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구체적인 투자금액과 투자시기 등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곳은 없다.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 기업은 투자여부가 상당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민간출자 투자금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 수요 조사]

조사대상	규모/기간	주요사항
해외진출희망 환경전문기업· 무역회사	1,800개사 (‘17.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C 서비스 활용 의사 : 평균 64% ○ 서비스수요 : 수출/입대행서비스(66%), 복합물류센터(62%)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둘째, 전문무역상사의 설립 초기 안정적인 기관 운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무역상사는 환경전문기업이 제공한 수출아이템(기술, 제품)의 직접 수출/수입대행, 물류통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18~’22) 신규 수출 5,456억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출 목표]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대행계약	150	200	300	400	400
직접수출	0	23	63	125	125
플랜트 수주	0	0	70	150	150
재무적 투자	0	200	500	500	2,100
합 계	150	423	933	1,175	2,775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운영비 5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⁴⁾ 그러나 전문무역상사는 민간기업이므로 「국가재정법」 제12조5)에서와 같이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정부 출연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이에 한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의 사업방향, 수입 및 지출규모, 재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 출연금인 운영비 5억원의 집행방식을 강구하는 등 향후 자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문무역상사의 수익 창출 계획은 전반적인 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전문무역상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 전용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타 부처 수출지원사업과 지원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전문기업은 수출실무 전문성, 수출실적, 기업 인지도가 부족하고, 해외 진출사업의 직접 수행시 리스크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운영 사업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민간투자자 유치와 사업초기 안정적인 기관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 현 황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법 제48조 및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전입금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전입금과 7개 환경관련 법정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는 자체세입을 동 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있다.¹⁾

2018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266억원이 감액된 4조 6,66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를 세입원별로 보면, 동 회계 세입예산안의 70.0%에 해당하는 3조 2,688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26.2%인 1조 2,214억원은 법정부담금 등 자체 수입 그리고 나머지 1,762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다.

[2018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2017 예산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증감액 (B-A)	증감율 (B-A)
자체세입	13,054	13,054	12,214	△840	△6.4
- 법정부담금	8,169	8,169	7,924	△245	△3.0
- 지자체 융자원금 회수	1,650	1,650	657	△993	△60.2
- 민간융자원금 회수	1,007	1,007	1,369	362	35.9
- 과태료	22	22	26	4	18.2
- 기타재산수입	77	77	107	30	39.0
- 면허료 및 수수료	6	6	7	1	16.7
- 기타(가산금 등)	2,123	2,123	2,124	1	0
전년도 이월금	3,584	3,584	1,762	△1,822	△50.8
일반회계전입금	32,292	33,674	32,688	396	1.2
합 계	48,930	50,312	46,664	△2,266	△4.6

자료: 환경부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7개 법정부담금은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 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협력보전금이다.

나. 분석의견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와 불납결손 처리 등을 통한 과년도 미수납금을 정리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자체 세입원인 환경관련 법정부담금²⁾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규정에 따라 법정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과하고 그 사업의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 즉, 수입과 지출간 강한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은 부과 및 사용용도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2018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7개로, 2014~2016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각각 49.9%, 49.9%, 47.1%로 연례적으로 낮은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법정부담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C/A)	(C/B)		
2014	967,300	1,844,892	919,726	95.1	49.9	892,317	32,849
2015	867,000	1,886,717	942,357	108.7	49.9	904,749	39,611
2016	803,748	1,717,864	809,546	100.7	47.1	853,670	54,647

자료: 환경부

이러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자체세입원인 법정부담금의 저조한 징수실적은 당해 연도 예산액 대비 높은 징수실적이 보여주듯 과거에 누적되었던 일정 규모의 미수납금이 연례적으로 수납되지 않고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반영됨에 따라 매년 비슷한 규모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요 자체세입원인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의 적극적인 징수실적 제고 노력과 더불어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59-593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¹⁾,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²⁾,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22조 2,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18억원(19.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6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억원, 고용보험기금 13조 863억원, 산재보험기금 7조 9,65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770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5,353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306억원이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0,815	81,917	81,917	86,917	5,000	6.1
- 일반회계	80,710	81,714	81,714	86,714	5,000	6.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5	203	203	203	0	0.0
기 금	18,240,843	18,597,825	18,597,825	22,194,584	3,596,759	19.3
- 고용보험기금	10,173,401	10,143,867	10,143,867	13,086,302	2,942,435	29.0
- 산재보험기금	7,083,085	7,446,161	7,446,161	7,965,492	519,331	7.0
- 임금채권보장기금	435,836	443,576	443,576	476,972	33,396	7.5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454,360	443,004	443,004	535,256	92,252	20.8
- 근로복지진흥기금	94,161	121,217	121,217	130,562	9,345	7.7
합 계	18,321,658	18,679,742	18,679,742	22,281,501	3,601,759	19.3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 1) 이하 ‘산재보험기금’
- 2) 이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23조 7,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1,387억원(27.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6,96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9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25억원, 고용보험기금 11조 182억원, 산재보험기금 5조 9,26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558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3,626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355억원이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52,428	2,201,259	2,350,553	5,859,577	3,509,024	149.3
- 일반회계	1,897,271	2,048,864	2,194,200	5,696,155	3,501,955	159.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844	71,093	75,051	80,900	5,849	7.8
- 지역발전특별회계	84,313	81,302	81,302	82,522	1,220	1.5
기 금	14,654,636	16,060,169	16,268,762	17,898,468	1,629,706	10.0
- 고용보험기금	8,686,171	9,857,841	10,066,434	11,018,158	951,724	9.5
- 산재보험기금	5,147,282	5,312,892	5,312,892	5,926,335	613,443	11.5
- 임금채권보장기금	412,153	448,359	448,359	455,838	7,479	1.7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79,727	299,346	299,346	362,604	63,258	21.1
- 근로복지진흥기금	129,303	141,731	141,731	135,533	△6,198	△4.4
합 계	16,707,064	18,261,428	18,619,315	23,758,045	5,138,730	27.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6.1%)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817억원에서 2018년 867억원으로 6.1%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710	81,714	81,714	86,714	5,000	6.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5	203	203	203	0	0
합 계	80,815	81,917	81,917	86,917	5,000	6.1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5조 9,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5,085억원(144.0%)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조 2,805억원에서 2018년 5조 7,819억원으로 153.5%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751억원에서 809억원으로 7.8% 증가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813억원에서 825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11,396	2,135,164	2,280,500	5,781,937	3,501,437	15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844	71,093	75,051	80,900	5,849	7.8
지역발전특별회계	84,313	81,302	81,302	82,522	1,220	1.5
합 계	2,166,553	2,287,559	2,436,853	5,945,359	3,508,506	144.0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35조 4,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173억원(22.6%)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13조 7,243억원에서 17조 2,495억원으로 25.7% 증가하였고, 산재보험기금은 12조 2,782억원에서 14조 9,573억원으로 21.8%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 2,017억원에서 1조 3,905억원으로 15.7% 증가하였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15,016,115	13,724,326	13,724,326	17,249,517	3,525,191	25.7
산재보험기금	12,750,250	12,278,202	12,278,202	14,957,342	2,679,140	21.8
임금채권보장기금	583,876	1,353,970	1,353,970	1,448,514	94,544	7.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48,269	1,201,710	1,201,710	1,390,450	188,740	15.7
근로복지진흥기금	266,799	326,573	326,573	356,289	29,716	9.1
합 계	29,365,309	28,884,781	28,884,781	35,402,112	6,517,331	22.6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35조 4,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173억원(22.6%)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13조 7,243억원에서 17조 2,495억원으로 25.7% 증가하였고, 산재보험기금은 12조 2,782억원에서 14조 9,573억원으로 21.8% 증가하였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14,836,116	13,724,326	13,724,326	17,249,517	3,525,191	25.7
산재보험기금	12,750,262	12,278,202	12,278,202	14,957,342	2,679,140	21.8
임금채권보장기금	583,876	1,353,970	1,353,970	1,448,514	94,544	7.0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48,269	1,201,710	1,201,710	1,390,450	188,740	15.7
근로복지진흥기금	268,858	326,573	326,573	356,289	29,716	9.1
합 계	29,187,381	28,884,781	28,884,781	35,402,112	6,517,331	22.6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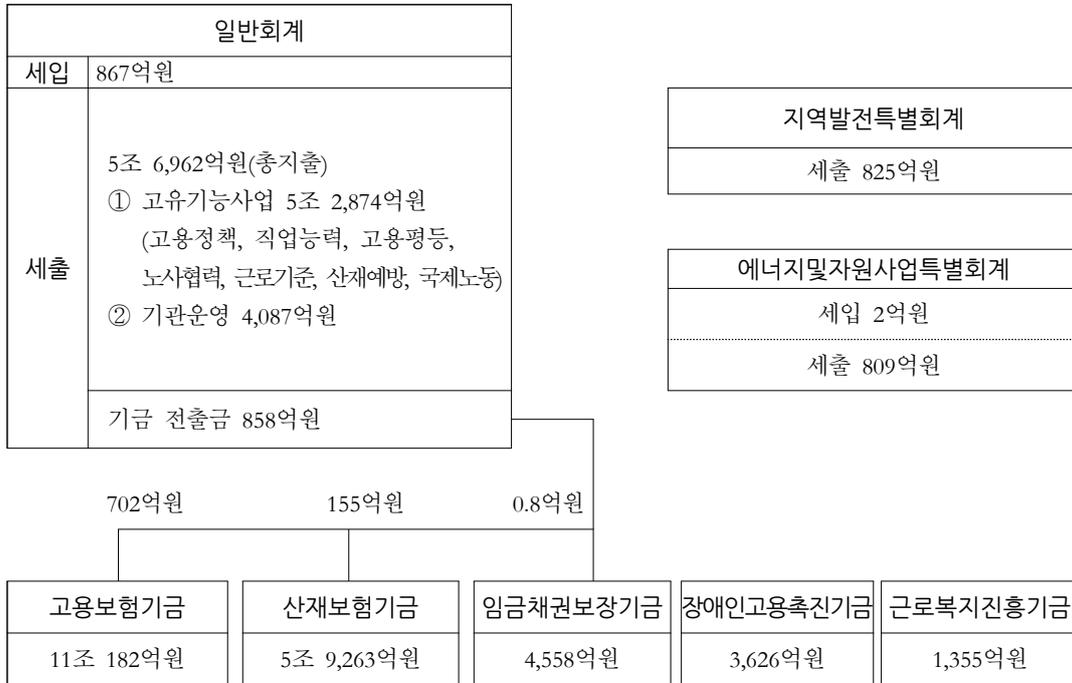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8년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702억원, 산재보험기금으로 15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0.8억원 전출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기금 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총지출 23조 7,580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2조 9,81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자리위원회운영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미래유망 분야 융합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8개 학과에 대해 실습기자재 확충 등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4개)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1,87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970,769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120
	일자리위원회운영	5,251
고용보험기금 (1개)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2,000
합 계		2,981,013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③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④ 고용창출장려금 ⑤ 구직급여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증액되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증액되었으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와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요건 임금 수준 상승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사업 확대에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4개)	고용노동통계조사	11,621	11,621	17,030	5,409	46.5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330,478	441,072	532,943	91,871	20.8
	사회적기업육성	19,868	19,868	32,350	12,482	62.8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35,309	35,309	50,113	14,804	41.9
	청년내일채움공제	47,592	70,915	222,988	152,073	214.4
	고용영향평가사업	3,774	3,774	6,800	3,026	80.2
	한국잡월드운영	14,357	14,357	19,253	4,896	34.1
	호남권직업체험센터설립	6,000	6,000	9,000	3,000	5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20,200	520,200	702,079	181,879	35.0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64,736	164,836	196,230	31,394	19.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382	1,382	1,869	487	35.2
	근로감독역량강화	5,961	5,961	9,441	3,480	58.4
	고용노동국제협력 및 통상협상대응	501	501	700	199	39.7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 (ODA)	1,744	1,744	5,355	3,611	207.1	
고용보험 기금 (8개)	고용창출장려금	262,032	342,956	441,508	98,552	28.7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7,438	7,438	10,226	2,788	37.5
	고용서비스모니터링	3,336	3,336	4,669	1,333	40.0
	구직급여	5,335,068	5,335,068	6,157,196	822,128	15.4
	조기재취업수당	113,931	113,931	135,429	21,498	18.9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258	11,258	15,158	3,900	34.6
	고용안정장려금	106,560	106,560	128,579	22,019	20.7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585	1,136,322	1,311,068	174,746	15.4
산재보험 기금 (3개)	산재보험급여	4,439,100	4,439,100	5,034,678	595,578	13.4
	산재근로자요양관리	2,718	2,718	14,717	11,999	441.5
	유해작업환경개선	21,966	21,966	49,026	27,060	123.2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3개)	장애인고용장려금	156,095	156,095	199,262	43,167	27.7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1,010	11,010	14,365	3,355	30.5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78	478	652	174	36.4
근로복지 진흥기금 (2개)	퇴직연금사업운영	2,404	2,404	3,990	1,586	66.0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3,746	3,746	5,992	2,246	60.0
합 계		12,725,248	12,991,926	15,332,666	2,340,740	18.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청년, 여성, 신중년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고, ② 고용영향평가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확충되었으며, ③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강화되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소속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둘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거 집행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구직급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은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직급여의 경우 2018년 모두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구직급여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 지원단가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주요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을 근거 마련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1-1. 고용보험기금 수입 과다 산정 문제

가. 현 황

고용보험기금은 가입자 고용보험료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2018년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17조 2,495억원이며, 이 중 고용보험료 수입은 27.4% 증가한 12조 4,184억원이다.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결산	2017 계획(A)	2018 계획안(B)	증감	
				B-A	(B-A)/A
고용보험기금 수입	15,016,194	13,724,326	17,249,517	3,525,191	25.7
자체수입	10,173,480	10,143,867	13,086,302	2,942,435	29.0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료)	9,040,129	9,750,334	12,418,434	2,668,100	27.4
재산수입	886,763	203,679	358,089	154,410	75.8
경상이전수입	152,653	122,903	154,545	31,642	25.7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1,919	65,405	152,279	86,874	132.8
관유물매각대	0	1,500	2,921	1,421	94.7
정부내부수입	70,718	70,718	70,200	△518	△0.7
여유자금회수	4,771,996	3,509,741	4,093,015	583,274	16.6

자료: 고용노동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나. 분석의견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 등 수입확대 방안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기금 지출소요에 비해 높게 반영된 것이므로 수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 보험료 징수를 제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보수 총액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입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직급여 지급일수·수준 상향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업급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반영한 것이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¹⁾ 완료 후 2019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²⁾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보장성 강화 계획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보장성 강화에 소요될 수입 확대 계획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에 따라 2018년 계획안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지출 소요에 비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수립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계획안은 당초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한 보험료율 수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³⁾⁴⁾

1) 현재 8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동 개정안들은 지급연령, 지급기간, 지급수준, 자발적 이직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부표 1] 참조).

2)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상 구직급여 지급 보장성 강화를 2019년도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65세 이상 일부 고용보험 적용은 재정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중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4) 「고용보험법」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

이와 같이 고용보험기금 지출 계획에 비해 수입 계획이 높게 반영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671억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나, 2018년에는 2017년 보다 지출소요가 일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확대 계획을 미리 반영함에 따라 2조 1,38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년 대비 재정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4	'15	'16	'17수정 (추경 반영)	'18계획 (정부안)	
총계	수입(a)	83,707	90,364	102,442	102,345	131,565	
	지출(b)	70,026	81,245	88,672	100,674	110,182	
	재정수지(a-b)	13,681	9,119	13,769	1,671	21,383	
	연말적립금(c)	73,361	82,106	95,850	97,521	118,905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수입(a)	25,035	26,867	31,995	29,659	33,312
		지출(b)	20,338	26,220	30,064	33,754	33,049
		재정수지(a-b)	4,697	647	1,931	△4,094	263
		연말적립금(c)	43,858	44,281	46,198	42,103	42,367
		적립금비율(c/b)	2.2	1.7	1.5	1.3	1.3
	실업급여	수입(a)	58,566	63,415	70,340	72,567	98,158
		지출(b)	49,639	54,978	58,557	66,861	77,081
		재정수지(a-b)	8,928	8,436	11,783	5,706	21,076
		연말적립금(c)	29,313	37,600	49,371	55,077	76,154
		적립금비율(c/b)	0.6	0.7	0.8	0.8	1.0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적립배율 = 연말 적립금/당해연도 지출(법정 적립배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1.0~1.5, 실업급여계정 1.5~2.0)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정부는 2018년 고용보험기금의 적정 보험료 수입과 재정수지 규모를 계획하여, 기금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표 1 : 고용보험법 개정안 비교표]

	지급연령	지급기간	지급수준	기여요건	하한액	자발적 이직자
현행	65세 이후 채용되는 경우 제외	90~240일 (자영업자: 90~180일)	평균임금의 50%	18개월간 180일 이상	최저임금의 90%	수급자격 제한
박광온 의원안	65세 이상 전부 적용	120~270일 (자영업자: 120~210일)	평균임금의 60%	24개월간 180일 이상	-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지급
홍영표 의원안	65세 이상 전부 적용	180~360일	-	18개월간 120일 이상	-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지급
강병원 의원안	-	120~270일	-	30개월간 180일 이상	-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지급
전재수 의원안	-	180~360일 (자영업자: 180~360일)	평균임금의 60%	18개월간 200일 이상 (자영업자: 24개월간 300일 이상)	-	구직급여액의 1/2 범위에 서 지급
김정우 의원안	-	-	-	-	-	1년 유예기간 이후 지급
김성태 의원안	65세 이전 부터 근무 하던 동일 사업장에 서 사업주 만 변경된 경우 적용	120~270일	평균임금의 60%	24개월간 270일 이상	최저임금의 80%	-
김삼화 의원안	-	120~270일	평균임금의 60%	-	-	-
이정미 의원안	-	180~360일	-	3년간 180일 이상	-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1-2.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여 의무지출의 적정 지급기준 설정 필요

가. 현황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지급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이다.

구직급여⁵⁾ 사업은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5.4% 증가한 6조 1,572억원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모성보호 육아지원⁶⁾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2,985억원이다.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구직급여	4,686,203	5,335,068	5,335,068	6,157,196	822,128	15.4
모성보호 육아지원	884,015	1,084,585	1,136,322	1,311,068	174,746	15.4
출산전후휴가급여	247,331	283,070	283,070	298,489	15,419	5.4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인 46,584원이고, 1일 상한액은 5만원이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1일 하한액은 54,216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5만원) 보다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하한액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54,21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⁷⁾

한편, 2017년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인 월 135만원이고, 상한액은 150만원이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15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 코드: 고용보험기금 1080-350

6)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8

7) 2017년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최저임금의 90%'로,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5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상한액과 인상된 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무지출 지원단가 변화]

구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내용	
			2017년	2018년(안)
구직 급여	하한액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90%: 일 46,584원	최저임금의 90%: 일 54,216원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 50,000원	일 50,000원	일 54,216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 으로 하한액과 동일금액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 135만원	최저임금: 월 157만원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월 160만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 현상으로 상한액 인상)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무지출의 지원단가를 조정하였지만, 상한선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구직급여의 경우 2017년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7,632원이지만, 2018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54,216원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비례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득비례로 보험료(보수총액의 1.3%⁹⁾)를 납부하고 원칙적으로 소득비례로 구직급여(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재분배

8) 2017년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최저임금으로,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월 13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9) 사업주 0.65%, 근로자 0.65%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비례 지급의 원칙을 지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1일 구직급여 단가를 46,584원~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구직급여 단가를 일률적으로 54,216만원으로 계획한 것은 소득비례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최저임금액의 90%)이 54,216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하한액이 상한액 50,000원 보다 높아짐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하한액 54,216원으로 구직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득비례 원칙에 부합하도록 2018년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간 격차가 2017년 15만원에서 2018년 3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소득비례 지급 원칙,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정 수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구직급여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내에서 운영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득비례로 보험료(보수총액의 1.3%)를 납부하고 소득비례(통상임금의 100%)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 다만, 고용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를 15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수입 및 지출 구조]

보험료 수입	지출
월보수액의 1.3% (사업주 0.65%, 근로자 0.65%)	- 구직급여: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설정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및 하한액 설정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경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는 3만원으로 2017년 격차(15만원)에 비해 축소되었는데, 소득비례 지급 원칙을 고려

할 때 2018년 상·하한액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소득비례 지급 원칙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통상임금구간별 지원 인원 비중]

(단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상한(160만원~)	67.3	81.3
157~160만원	2.4	1.2
하한(~157만원)	30.3	17.5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의 인상이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고용노동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한액 인상시 추가소요액은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8억원, 상한액을 17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337억원, 상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450억원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득비례 지급 원칙,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 모성보호 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모성보호 육아지원¹⁰⁾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5.4% 증가한 1조 3,111억원이다.

[2018년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모성보호 육아지원 (고용보험기금)	884,015	1,084,585	1,136,322	1,311,068	174,746	15.4
출산전후휴가급여	247,331	283,070	283,070	298,489	15,419	5.4
육아휴직급여	625,243	782,648	834,385	988,577	154,192	18.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0,738	17,567	17,567	23,175	5,608	31.9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안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은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 추경으로 추진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확대(첫 3개월 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하한액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최대 2년 사용) 추진하고,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 수준을 60%에서 80%로 인상¹¹⁾한 것에 기인한다.

10)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8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 60→80% 상향(상한 150만원)

나. 분석의견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등으로 모성보호 육아지원의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도 향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2018년 계획안은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계획액 대비 20.8% 증가한 1조 3,111억원 규모이다. 향후 모성보호 육아지원의 재정소요는 2018년 1조 3,111억원, 2019년 1조 6,071억원, 2020년 1조 7,421억원, 2021년 1조 8,972억원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기재정소요 전망]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585	1,311,068	1,607,106	1,742,130	1,897,176
- 출산전후휴가급여	283,070	298,489	304,214	310,049	315,996
- 육아휴직급여	782,648	988,577	1,277,552	1,405,307	1,552,864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7,567	23,175	24,334	25,551	26,828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사업자와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된다. 그러나 2018년 계획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 개편이 반영되지 않은 지출 수준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20년부터 당기수지 적자(2,073억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¹²⁾

따라서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제도개선 반영 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자 전환 시기와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기금의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기획재정부,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2017. 3.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적립금	총수입	보험료 수입	기금운용 수익	정 부 지원금	총지출	보 험 사업비	관 리 운영비	재정 수지
2015	37,600	63,415	61,526	604	705	54,978	54,415	564	8,437
2016	44,718	65,673	63,483	888	705	58,556	57,956	600	7,117
2017	50,033	69,115	66,709	1,074	705	63,800	63,147	653	5,315
2018	53,317	72,879	70,242	1,272	705	69,595	68,882	713	3,285
2019	54,180	76,795	73,969	1,425	705	75,932	75,154	777	863
2020	52,107	80,699	77,800	1,462	705	82,772	81,924	848	△2,073
2021	46,438	84,499	81,665	1,361	705	90,169	89,245	923	△5,670
2022	36,543	88,210	85,554	1,147	705	98,105	97,100	1,005	△9,894
2023	21,718	91,783	89,432	804	705	106,608	105,517	1,092	△14,825
2024	1,375	95,195	93,294	318	705	115,538	114,355	1,183	△20,343
2025	△25,020	98,361	97,067	△324	705	124,756	123,478	1,277	△26,395

자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2017. 3.)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소속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로 2조 9,70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	0	0	2,970,769	2,970,769	순증
사업주 지원금	0	0	0	2,929,372	2,929,372	순증
운영비	0	0	0	41,397	41,397	순증
- 고용노동부 직접	0	0	0	227	227	순증
- 근로복지공단 위탁	0	0	0	41,170	41,17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2017. 7. 15)하면서 정부는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우려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2017. 7. 16)하였다. 정부는 동 대책에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였으며, 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이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20% 이하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사업주에 지원한다.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5인 미만 농림어업,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 65세 이상자 등)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62-300

일자리 안정지원 지원은 사업주 지원금(사업주 인건비 지원 2조 9,294억원)과 운영비(근로복지공단 위탁 등 414억원)로 구성되며,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지원대상자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는 총 299만 8,000명이고, 신청률(66~95%)을 적용하여 236만 4,000명이 실제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의 부담 때문에 100%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단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었다. 최저임금 100~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추세를 넘어선 추가 부담 시급 581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월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²⁾ 상승분을 일부 추가(1만원)한 것이다. 최저임금 100%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11.8시간임을 고려하여 월 6.9541만원(13만원×111.8시간÷209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사업주 지원금 산출 내역]

	지원대상 근로자 (천명)	신청률 (%)	지원기간 (개월)	실제 지원인원 (천명)	근로자 1인당 월 지원액 (만원)	총 사업주 지원금 (백만원)
최저임금 100~120%	1,387	95	12	1,317	13	2,055,534
최저임금 100% 이하	1,611	65	12	1,047	6.9541	873,838
합 계	2,998	-	-	2,364	-	2,929,37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보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한다.³⁾ 2018년 근로복지공단 위탁운영비로 41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238억원 규모이다. 근로

2) 노무비용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3) 지원대상 사업주가 1회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매월 지급되며, 2018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된다.

복지공단은 동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신규인력으로 정규직 150명, 계약근로자 703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2019년 이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지원의 효과, 최저임금 인상폭 등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1.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범위에 따라 소요 예산 규모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임금수준 등 지원대상자 범위에 따라 소요 예산 규모가 변하므로 지원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재정 지출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같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사업장 이하를 대상으로 적정 지원대상을 설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고려하여 폭 넓은 지원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로 요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⁴⁾

4) 정부는 동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면서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수 기준이 사업주의 최저임금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불충하다면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인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⁵⁾

한편,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다른 근로자의 임금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긴밀한 연계 필요

가. 현 황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일명 두루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9% 증가한 7,021억원이다.

업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점에 영세기업에 대한 적시 지원이 곤란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하였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명시된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2017.8.21)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5) 참고로, 중소기업부는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2015년 매출액 단일 기준을 도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매출액 상한선을 1,500억원(제조업 6개)으로 하고 업종별로 200억원 단위로 그룹이 구분되며, 소기업은 업종별로 120억원~10억원 이하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을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계약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27,486	520,200	520,200	702,079	181,879	34.9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예산 증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수준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신규가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가입자⁶⁾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비율을 2017년 60%에서 2018년 70%로 인상하고, 기존가입자⁷⁾ 지원 비율을 2017년 40%에서 2018년 2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되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발생하여 동 사업의 효과가 예상한 것보다 저하될 우려가 있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을 우려하여 사업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되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므로, 미가입 사업장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받게 되지만 동시에 4대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6) 최초 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자(다만,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7)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즉 사회보험에 가입중인 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가입 이력이 있는 자(최초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포함) 등

료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현재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제출시 가입대상이 되는 다른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⁸⁾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한 통일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을 통해 볼 때, 저임금 근로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고용형태	규모	2016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특수형태제외)	전체	90.7	89.7	90.1	98.1
	5인미만	73.9	74.4	75	92.2
	5~29인	93.8	90.5	90.9	99.5
	30~299인	97.6	96.5	96.4	99.9
	300인미만	89.8	88.3	88.6	97.8
	300인이상	96.6	99.5	99	99.9
정규직근로자	전체	95.7	98.3	98.2	98.3
	5인미만	86.1	92.8	93.2	92.3
	5~29인	97.7	99.3	99.1	99.5
	30~299인	99.1	99.9	99.7	100
	300인미만	95.5	98	98	98
	300인이상	96.4	99.9	99.4	100
비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제외)	전체	72.1	59.4	56.7	97.4
	5인미만	47.7	36.6	34.2	91.9
	5~29인	79.5	60.6	57.2	99.3
	30~299인	89.7	80.1	77.3	99.5
	300인미만	70	56.6	53.3	97.2
	300인이상	97.7	96.3	95.7	9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8) 근로자가 각 공단에 사회보험 성립신고서 제출시 가입대상이 되는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다시 각 공단으로 전송된다. 다만, 사회보험별 가입 및 적용제외 범위에 차이가 있어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르며 고용보험 가입시 모두가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월평균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2016. 4.		
		국민연금 ¹⁾²⁾	건강보험 ¹⁾	고용보험
전 체	19,467	70.2	73.6	71.1
100만원 미만	2,182	13.2	18.4	17.6
100~200만원 미만	6,735	60.6	66.2	65.0
200~300만원 미만	4,985	81.9	83.7	82.4
300~400만원 미만	2,797	91.4	92.3	91.1
400만원 이상	2,768	96.4	97.6	95.2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자료: 통계청

4대 사회보험 가입 시 사업주 부담금은 2018년 최저임금(157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월 16만원 수준이다.⁹⁾ 그런데 인건비 지원(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동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월 보수 157만원(2018년 월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

(단위: 원)

	사회보험료 지원이 없는 경우			
	월간		연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합 계	132,979	163,594	1,595,748	1,963,128
고용보험	10,205	14,130	122,460	169,560
국민연금	70,650	70,650	847,800	847,800
건강보험	52,124	51,124	625,488	625,488
산재보험	0	26,690	0	320,280

주: 산재보험료는 1.7% 가정

자료: 고용노동부

9)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 73.9%, 건강보험 가입률 74.4%, 국민연금 가입률 75.0%, 산재보험 가입률 92.2%이므로, 가입률이 높은 산재보험을 제외하더라도 추가 부담액은 월 14만원 수준이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¹⁰⁾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어,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신규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발생한다.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월 소득 1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대상(2018년 예산안 기준¹¹⁾)으로 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인 소득수준이 최저임금 120% 이하(월 188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2018년 신규가입자 70%¹²⁾)만 지원하므로 신규 가입자의 경우 여전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근로자 1인당 가입 첫해의 보험료 지원수준은 59,346만원이고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부담분 163,594원의 나머지(104,248원)를 자부담해야 한다.

[월보수 157만원 근로자 1인당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 변화]

(단위: 원)

	신규가입자 지원				기존가입자 지원			
	2017년 (60% 지원)		2018년 (70% 지원)		2017년 (40%)		2018년 (20%)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계	48,513	50,868	56,599	59,346	32,342	33,912	16,171	16,956
고용보험	6,123	8,478	7,144	9,891	4,082	5,652	2,041	2,826
국민연금	42,390	42,390	49,455	49,455	28,260	28,260	14,130	14,130
건강보험	0	0	0	0	0	0	0	0
산재보험	0	0	0	0	0	0	0	0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인상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인상 부담이 예상되므로,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2018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2016년 월 160만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7,021억원이다.

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원수준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12) 2017년 지원비율(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60% 지원)을 2018년 기가입자 20%, 신규가입자 70%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신규가입자의 지원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신규가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신규가입자의 경우 2017년 60%에서 2018년 70%로 인상하였으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7년 40%에서 2018년 20%로 인하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인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7년 50,868원에서 2018년 59,346원으로(월 보수 157만원 기준) 증액 폭이 크지 않아 신규가입자를 확대하는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2017년 40%에서 2018년 20%로 인하할 계획이며, 지원 비율 인하로 사업주 보험료 지원액이 2017년 근로자 1인당 월 33,912원에서 월 16,956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영세업체의 기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인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의 연내 구축 필요

2018년 1월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시기에 맞춰(2018년 1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자금 신청·접수, 심사/자격 결정, 안정자금 지급, 변경관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예산은 총 91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전산장비 구입 비용은 70억원, 개발비는 21억원이다.

[시스템 구축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전산장비	개발비
합 계	9,149	7,049	2,1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	6,065	4,035	2,030
전자민원접수시스템(토달서비스)	582	582	0
전자문서관리시스템(두루모아)	490	455	35
전자팩스	376	341	35
전자문서결재시스템	168	168	0
백업장비	194	194	0
정보보안	290	290	0
망분리시스템	984	984	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 공고(9.18~10.10), 계약 및 개발착수(10.24)를 거쳐 안정자금 ‘신청·접수 업무’를 2017년 12월말에 우선 개통하고, 순차적으로 ‘환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2018년 3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전산시스템 정보의 연계·입수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재정부담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한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분까지 지원(청년 9명 채용시)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추경예산에서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3,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계획안에는 22,1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4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0,000명은 신규 지원이며 2,100명은 2017년 지원자에 대한 계속 지원분이다.

[2018년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2018	증감	
	당초	수정(A)	계획안(B)	B-A	(B-A)/A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0	4,800	243,000	238,200	4,962.5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존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2-300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존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은 2011~2016년 동안 2,478명을 지원하는데 104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7~2023년 동안 6만명에 대해 2조 3,74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비교]

구분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망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10인 미만) ○ 17대 신성장동력산업(산업부 '09년) ○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망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17대 신성장동력산업(산업부, '09),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산업·미래부, '15), 5대 신산업(산업부, '16), 바이오헬스 종합발전전략(복지부, '16), 11대 유망 신산업(기재부, '16) 등
추진근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지원요건	실업자 신규채용 (1명 채용시마다 개별 지원)	청년 실업자 신규채용 (3명 채용을 조건으로 조건 충족시 1명 인건비 지원)
지원수준	연 720만원, 1년간	연 2,000만원, 3년간
지급주기	3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사업기간	'11~'17년	'17추경~20년(한시사업)
지원인원 및 예산	2011~2016년 2,478명, 104억원	2017~2023년 6만명, 2조 3,748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기 재정소요]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예산액	48	2,420	5,100	6,680	5,580	2,900	1,020	23,748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동 계정은 최근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는 2016년 흑자에서 2017년 4,094억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금 배율도 2014년 2.2배에서 2016년 1.5배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1.3배로 예측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4	2015	2016	2017수정 (추경 반영)
수입(a)	25,035	26,867	31,995	29,659
지출(b)	20,338	26,220	30,064	33,754
재정수지(a-b)	4,697	647	1,931	△4,094
연말적립금(c)	43,858	44,281	46,198	42,103
적립금비율(c/b)	2.2	1.7	1.5	1.3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재정수지

2. 적립배율 = 연말 적립금/당해연도 지출(법정 적립배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1.0~1.5, 실업급여계정 1.5~2.0)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에 소용되는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동 사업이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과 유사한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사업은 2011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원인원 기준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2014년 44.2%, 2015년 76.9%, 2016년 75.6%로 저조한 수준이며, 지원인원도 2016년 578명²⁾ 수준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원대상이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이 내의 10인 미만 사업주로 업력과 규모가 한정되어 있었고, 2009년 최초로 17대 신성장동력산업(산업부)으로 지원 업종이 지정된 이후 산업 변

2)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사업은 2011~2014년까지는 성장유망업종 지원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5년 이후 성장유망업종 지원 이외 2개의 내역사업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 성장유망업종 지원실적은 537명이다.

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사업 집행 추이]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당초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목표인원 (C)	지원인원 (D)	지원률 (D/C)
2011	5,760	5,760	121	2.1	6,000	42	0.7
2012	3,672	3,672	1,523	41.5	700	440	62.9
2013	3,030	3,030	1,796	59.3	2,100	384	18.3
2014	3,650	3,650	1,791	49.1	892	394	44.2
2015	4,090	4,090	3,961(2,912)	96.8	1,000	769(690)	76.9
2016	2,045	3,123	3,753(2,270)	120.2	764	578(537)	75.6
2017(7월)	2,336	2,336	1,159(730)	49.6	700	200(174)	28.5

주: 1. 2017년 집행실적은 7월말 기준
 2.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은 2011~2014년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실적이며, 2015년 이후 성장유망업종 지원 이외 2개의 내역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는 성장유망업종 지원실적임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성장 산업분야의 최신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유망업종을 233개로 새롭게 확대·지정하였고, 기존 사업이 10인 미만 기업에서 1명 고용시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새로운 사업은 대상기업 규모를 우선지원 대상기업³⁾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청년 3명 고용시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2018년 1년동안 2만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에 따라 기업이 6만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현황

장년고용지원¹⁾ 사업은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²⁾ 사업주에게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39.1% 감소한 293억원이다.

기존 사업은 잔여물량만 지원하고 신규 지원은 중단하였으며, 대신 장년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인건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³⁾ 만 50세 이상 신중년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년 미취업자 2,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도 장년고용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년고용지원	48,176	48,176	29,325	△18,851	△39.1

자료: 고용노동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2-300
-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 장년고용지원의 개편 취지는 기존 장년인턴지원금이 직무에 상관없이 지원되어 장년층의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년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비전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분석의견

2018년 시범사업을 기존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개발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일자리가 기존사업의 낮은 고용유지율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지원 사업이 고용유지율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 좋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사업 추진은 중단하고 2018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장년고용지원 사업은 직무에 상관없이 지원되어 장년층의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장년고용지원 사업 고용유지율]

(단위: %)

구분	지원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	지원 종료 후 1년 고용유지율
2013	72.7	58.4
2014	72.1	56.5
2015	72.2	54.0

자료: 고용노동부(워크넷 EIS 2017년 8월 마감 기준)

[장년고용지원 사업 참여자 직종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8월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합 계	8,158	100.0	8,549	100.0
관리직	569	7.0	557	6.5
경영·회계·사무관리직	961	11.8	905	10.6
금융·보험관련직	2	0	1	0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6	0.2	16	0.2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5	0	5	0
보건·의료 관련직	1,072	13.1	1,172	13.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9	1.2	239	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54	0.7	81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416	5.1	571	6.7

(단위: 명, %)

구분	2016		2017.8월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24	1.5	144	1.7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33	4.1	254	2.9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26	0.3	11	0
음식서비스 관련직	668	8.2	588	6.9
건설 관련직	269	3.3	240	2.8
기계 관련직	520	6.4	576	6.7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306	3.7	304	3.6
화학 관련직	151	1.8	148	1.7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24	2.7	205	2.4
전기·전자 관련직	293	3.6	372	4.3
정보통신 관련직	95	1.2	118	1.4
식품가공 관련직	282	3.5	296	3.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663	20.4	1,722	20.1
농림어업 관련직	10	0.1	24	0.3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장년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시범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지원하므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용요건이 유사하다.

[장년고용지원 사업 개편 내용]

사업시작연도	기존	개편
	2013	2018년 시범사업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 직무중심으로 만 50세 이상 장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시범사업 2천명 운영)
지원내용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9개월간 월 60만원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60만원(정규직)
채용요건	○ 정규직(무기계약) ○ 최저임금 110% 이상	○ 정규직(무기계약) ○ 최저임금 110%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하여 고용유지율과 고용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신중년 적합 직무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를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설계를 목적으로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로 정의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신중년적합 직무 기준(안)]

	내 용
기준	①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② 오랜 직업생활 노하우 활용 가능하거나 또는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직무 ③ 향후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 직무

자료: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이 기존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신중년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신중년 적합 직무 일자리가 기존사업의 일자리와 차별화되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내일채움공제¹⁾2)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4,276억원 규모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적립하여 2년 만근시 근로자는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700만원을 지원받아 400만원은 근로자 자산형성으로 적립하고 30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 청년근로자 지원금은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기업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었다.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	0	47,592	70,915	222,988	152,073	214.4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기금)	0	0	0	204,602	204,602	순증
합 계		47,592	70,915	427,590	356,675	-

주: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내에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함께 편성하다가 2018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분리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신규 지원대상은 2016년 1만명, 2017년 5.5만명, 2018년 6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취업성공패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44-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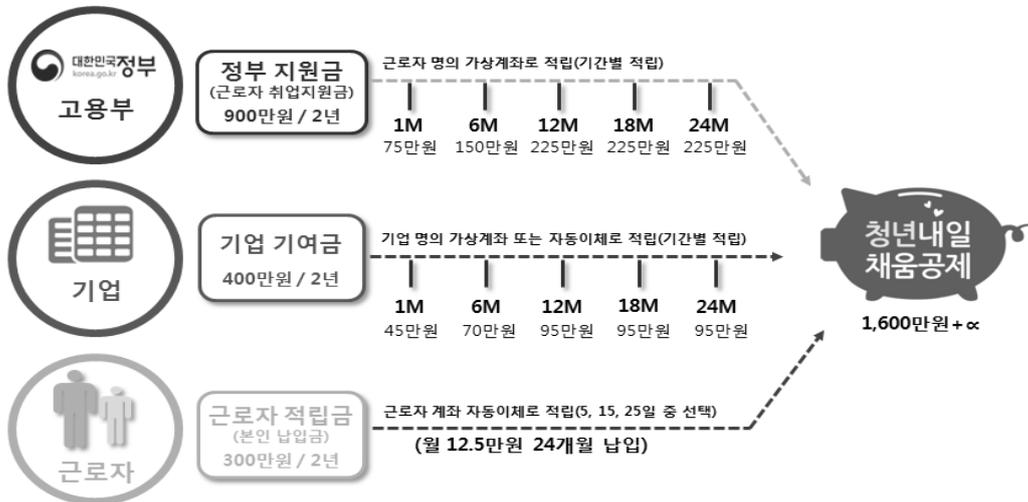
2)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1-350

키지지원·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이다.

청년공제 참여기업에게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학습병행훈련 등 각 참여 경로별로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인턴 수료자 및 고용센터 알선자 채용기업에게는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이수자 채용기업에게는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자 채용기업에게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별도 지원금이 없었으나, 2018년 예산 안에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기·금액은 정규직 취업(전환) 1개월 후 7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18·24개월 후 각 170만원(총 5회 분할 지급)이며,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기업은 동일 주기에 각각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공제 참여청년에게는 참여경로와 무관하게 2년 간 9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주기·금액은 정규직 취업(전환) 1개월 후 75만원, 6개월 후 150만원, 12·18·24개월 후 각 225만원(총 5회 분할지급)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17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2017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대비 공제가입 실적이 2016년 시범사업 51.4%, 2017년 1~8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은 2017년 9월말 37.7%에 그쳤다.

[2016~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현황]

(단위: 명, %)

	계획인원 (A) (추경포함)	참여 인원	정규직 채용 (전환)	공제 가입 (B)	공제 가입률 (B/A)	해자 (C)	공제		
							가입 유지자 (D=B-C)	공제 유지율 (D/B)	
2016. 7. 1. ~12. 31.	청년인턴제	10,000	6,678	5,490	5,135	51.4	950	4,185	81.5
2017. 1. 1. ~8. 31.	청년인턴제	33,000	17,719	10,590	9,241	28.0	590	8,651	93.6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8,500	5,420	5,420	4,500	24.3	365	4,136	91.9
	일학습병행	3,500	166	166	145	4.1	0	145	100.0
	합계	55,000	23,305	16,176	13,886	25.2	954	12,931	93.1

주: 2017.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집행률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47,592	70,915	14,228	20.1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108,573	126,039	60,036	47.6

주: 1. 2017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
2.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기존 청년인턴제 잔여사업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어, 순수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집행액이 아님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인턴제 경로의 경우, 인턴 경로로 참여하여 인턴기간(최대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으로 전환된 이후에 청년공제 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인턴 수료 후 정규직 미전환자, 공제미가입자, 중도해지자 등의 존재로 인해, 참여 인원과 공제 가입유지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 기업은 청년공제 참여 시, 다른 경로와 달리 자부담으로 청년에게 기여금을 적립(2년간 400만원)함에 따라, 자발적 참여 유인이 낮아 실적이 부진하였다. 2017년 8월말 현재, 일학습병행 경로 참여자는 166명으로서, 목표 3,500명(본예산 3,000명+추경 500명) 대비 4.7%에 불과하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경로로 참여한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금 지급 요건, 기준 등이 상이하며,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정책이해도나 체감도가 낮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³⁾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대상자를 과거 집행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즉, 2016년 참여자 중 2018년에도 지원이 지속되는 대상자의 경우,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가입자 중 이미 중도 해지한 인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중도해지자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 계획인원이 모두 공제에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2018년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8월말 현재 공제가입률 기준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이들에 대한 계속지원분을 위해 반영된 2018년 예산은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8년의 경우 6만명을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2017년 신규 공제가입 실적(2017년 8월말 현재 13,886명)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지원대상자 산정이 필요하다.

[2018년 예산안에서 지원대상자(①+②+③) 산정 내역]

① 2016년 참여자(계속지원)	② 2017년 참여자(계속지원)	③ 2018년 참여자(신규지원)
공제가입자 기준 5,135명	계획인원 기준 - 본예산 5만명(인턴제 3만명, 취업패 및 일학습 2만명) - 추경 0.5만명(인턴제 0.3만명, 취업패 및 일학습 0.2만명)	계획인원 기준 - 6만명(인턴제 4만명, 취업패 및 일학습 2만명)

3) 다만, 2018년도에는 일학습병행 경로 참여기업에 2년간 4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기금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참여경로별 상이한 지원금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가. 현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¹⁾ 사업은 ‘진단·상담 →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 알선’의 3단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5,329억원이다.

이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18~34세)이 3단계 구직 활동 시 수당(3개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추경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추경 반영액은 681억원(9만 5,000명 수급 예상)이며, 2018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예산안은 1,944억원(21만 3,000명 수급)이다.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24,623	330,478	441,072	532,943	91,871	20.8
청년구직촉진수당	0	0	68,118	194,398	126,280	185.4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동일 청년에 대한 중층적 지원방식과 폭 넓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간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과 다른 청년층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어, 동일한 청년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구직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이 중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노동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6-301

부가 동일인에 대해 상담, 훈련, 취업, 근속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청년취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과 연계 사업 현황]

사업명	구분	I 유형		II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대상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청년(18~34세)		청년(18~34세) 전체	
	1단계: 상담	참여수당 25만원		참여수당 20만원	
	2단계: 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 (자부담 최대 10%), 훈련수당 월 28.4만원	훈련수당 또는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 (자부담 5~50%), 훈련수당 월 28.4만원	훈련수당 또는 구직급여
	3단계: 알선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30만원(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30만원(3개월)	
	근로자지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기업지원 (취업시)	1인당 1년간 720만원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36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지원	2년간 900만원		2년간 900만원	
	기업지원	-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기업지원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 연 2,000만원 지원, 3년간 지원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 연 2,000만원 지원, 3년간 지원	
비고	- 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수급이 안됨 - 고용촉진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복수급이 안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주: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을 지원하며, II유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청년층 전체를 지원함
자료: 고용노동부

- 1)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청년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와 청년의 고용유지를 통한 경력형성을 위해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상호보완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상담, 훈련, 알선, 취업성공수당이 모두 지원되며,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수료자 중 일정 비율의 청년층에게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지원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동일인을 취업 준비에서부터 취업을 거쳐 3년간 고용 유지까지 지원하게 되어 동일인에게 중층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훈련수당, 구직급여,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장기근속 자산형성 등 청년에게 직접 귀속되는 현금지원도 중층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수급자의 프로그램 의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²⁾

청년실업자(15~34세)가 54만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15~64세)의 56.4%를 차지하고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2007년 5.9%에서 2016년 7.5%)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과 연계하여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지원대상을 달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 간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³⁾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3. 11)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종료 후 한국형 실업부조 참여를 바로 허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의 소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급기간 종료 후 일정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2018년 30만원, 3개월 → 2019년 50만원, 6개월 →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므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을 보완하는 실업부조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인 사회초년생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정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 현황

일자리위원회운영¹⁾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5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자리위원회 운영	0	0	0	5,245	5,245	순증
인건비	0	0	0	665	665	순증
운영비	0	0	0	4,580	4,58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50호, 2017. 5. 16. 제정)」에 근거하여 2017년 5월에 신규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부처 간의 일자리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 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위원회 직원은 현원 37명, 정원 25명이다.

[일자리위원회 직원 현황]

구분	현원	채용 등	비고
일반직공무원 (파견)	23명: 고위공무원 2명, 3급 1명, 4급 10명, 4.5급 3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별도(18): 고위공무원 2명, 3급 1명, 4급 9명, 4.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재부 2명 행안부 2명 고용부 8명 산업부·과기부·국토부· 문체부·복지부·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6-301

구분	현원	채용 등	비고
		비별도(5): 4급 1명, 5급 이하 4명	농림부·중기부·인사처· 여가부·통계청 각 1명
전문임기제공무원	7명(나급 7명)	자체채용	
기타보수직	3명(사무보조 2명, 운전원 1명)	자체채용	
국책연구기관 등	3명(KDI, KLI, 한국원), 부위원장	비별도(3)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위원회는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고 각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공동선언(8.23)”에 따라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에 있다.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지급되는 전문가 자문료 등을 위원회 참석비와 별도로 편성하고, 각 용도별로 적정 소요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고,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편성하되,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에 위원회 참석비,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회의수당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최고 150,000원 보다 높은 200,000원으로 편성하였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 편성 내역]

일자리위원회 회의체 운영 (7억 3,600만원)	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 : 200천원 * 4회 * 20명=16,000,000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 위원 회의수당 : 200천원 * 회의(120회)*30명=720,000,000원
----------------------------------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료 등을 위원회 참석비와 별도로 편성하고, 전문가 자문료 등이 각 용도별로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퇴직연금사업운영¹⁾은 소규모사업장 취약 근로계층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66.0% 증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예산 증액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이 신규내역(10억 7,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과 운영수수료를 지원(3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퇴직연금사업운영	3,615	2,404	2,404	3,990	1,586	66.0
손실보상금	0	0	0	1,078	1,078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10억 7,800만원은 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사용자부담금의 10%(10억 2,200만원)를 지원하고 운영수수료²⁾의 50%(5,600만원)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적용 확대 및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에 있어 가입자들이 납부한 퇴직연금을 기금화(Pooling)하여 운용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2) 운영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한 것이다.

당초에는 현행 사업과 같이 기금제도 적용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획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금제도 적용대상을 확대(30인 이하 → 50인 이하)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근거법률 개정 지연 우려, 사업대상자 선정 오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저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동 사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도입된 사업이므로 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은 2014년 8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³⁾이 발의되고, 2015년과 2016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었다.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예산 반영 및 불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	불용 사유
2015	500,000	0	500,000	관련법 개정 지연
2016	958,000	0	958,000	관련법 개정 지연
2017	0	0	0	0
2018(안)	1,078,000	0	0	0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⁵⁾을 전제로 재정지원금 편성되었으므로, 법률 개정 추이를 보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14. 11월) 19대 국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15. 6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4)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과 퇴직연금 적용의무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2015~2017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16. 9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17. 6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둘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금의 지원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안 편성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계획안을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 계획안에서 부터 설정된 소득 수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해 해소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57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대상을 2018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수준인 월 소득 기준 16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6억 8,300만원의 추가 소요⁶⁾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하므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설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에는 은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이 참여 중이다. 2016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0조원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적립금은 1.2조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5%, 2015년 0.7%, 2016년 0.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은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2014년말	53.0(49.5)	278(25.9)	7.5(7.0)	18.3(17.1)	0.6(0.5)	107.1(100.0)
2015년말	63.4(50.1)	31.7(25.1)	22.0(17.4)	8.4(6.7)	0.9(0.7)	126.4(100.0)
2016년말	73.3(49.8)	36.0(24.5)	26.6(18.1)	9.9(6.8)	1.2(0.8)	147.0(100.0)

주: () 안의 숫자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6) 고용노동부가 추계한 자료이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수익률을 비교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4개 금융회사 중 근로복지공단의 운용수익률은 41위이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97.2%)이 높는데, 원리금보장상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단의 운용수익률은 44개 금융회사 중 39위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 가입자의 연간 총비용 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유도하는 것 보다는 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 비용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부담금과 운영수수료의 지원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들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운용 역량을 갖추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수익률]

(단위: %)

금융기관명	연간 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	금융기관명	연간 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
신영증권	1.09	3.83	동양생명	0.69	3.12
유안타증권	0.79	3.78	KB증권	0.64	3.12
IBK연금보험	0.31	3.69	삼성생명	0.68	3.1
NH투자증권	0.76	3.52	부산은행	0.49	3.09
한국투자증권	0.85	3.47	미래에셋대우	0.87	3.08
동부생명	0.57	3.43	KEB하나은행	0.62	3.06
동부화재	0.32	3.39	농협은행	0.58	3.05
미래에셋생명	0.57	3.35	HMC투자증권	0.8	3.04
현대라이프생명	0.48	3.34	신한은행	0.68	3.02
신한생명	0.64	3.33	삼성화재	0.58	3.02
대구은행	0.69	3.32	우리은행	0.53	3.01

(단위: %)

금융기관명	연간 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	금융기관명	연간 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
한화생명	0.58	3.32	경남은행	0.47	3.01
교보생명	0.7	3.28	국민은행	0.64	3.01
신한금융투자	0.69	3.27	KB손보	0.49	3
대신증권	0.8	3.26	중소기업은행	0.49	2.99
흥국생명	0.65	3.25	한국산업은행	0.59	2.99
롯데손보	0.46	3.23	KDB생명	0.9	2.98
하이투자증권	0.79	3.21	광주은행	0.52	2.95
현대해상	0.48	3.19	근로복지공단	0.16	2.86
제주은행	0.37	3.18	수협은행	1.35	2.76
하나금융투자	0.77	3.17	메트라이프생명	1.33	2.58
한화손보	1.15	3.13	삼성증권	1.03	2.49

주: 1.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수수료(운용·자산관리)+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펀드판매수수료)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누어 산출

2. 연평균 수익률은 기준년월 기준 과거 5년 동안의 각 연도별 수익률의 기하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가. 현 황

고용영향평가¹⁾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2% 증가한 68억원이다.

[2018년도 고용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영향평가	3,692	3,774	3,774	6,800	3,026	80.2

자료: 고용노동부

예산안 증액은 재정사업 고용평가를 2017년 250개에서 2018년 1,000여개(전체 일자리사업, R&D·SOC·공공조달사업은 100억원 이상)로 확대하고, 주요 사업군 고용효과 분석(22개 사업군, 11억원)을 신규로 도입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을 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할 계획인데, 이는 ① 제·개정법령 고용영향평가 ② 주요정책 심층 평가 ③ 정책평가 확대에 따른 지원 인력 등 보강 ④ 고용효과 DB구축을 위한 인력이다. 특히, 증원 인력 16명 중 5명은 제·개정법령 고용영향평가의 신규 도입을 위한 인력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45-301

[2018년도 고용영향평가 사업 증액 내역]

	2017 예산	2018 예산안
정책 고용영향평가	3,330백만원 ■ 2,880백만원(90백만원×32개)	3,360백만원 ■ 3,360백만원(80백만원×42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660백만원 ■ 450백만원(90백만원×5개) ■ 210백만원(3.5백만원×20명×3월)	1,080백만원 ■ 450백만원(90백만원×5개) ■ 630백만원(3.5백만원×60명×3월)
주요 사업군 고용효과분석	-	1,100백만원 ■ 1,100백만원(50백만원×22개)
고용영향 평가센터 운영비	234백만원 ■ 인건비 4명 (100백만원)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지원 - 정책사업 고용영향평가 지원 ■ 기타운영비(134백만원)	1,254백만원 ■ 평가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4명→20명) 500백만원 ① 재정사업평가 확대(200→1,000개)· 주요예산사업 산출효과 분석·사업 군별 평가(고용창출경로분석)·산출식 개선연구 확대(9명) ②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신규, 5명) ③ 주요정책 심층평가(5명) ④ DB구축 등(1명) ■ 기타운영비(754백만원)
업무추진비	-	6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는 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18년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제·개정법령 고용영향평가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017. 7. ~ 10.)을 수행 중이며, 동 용역이 완료되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는 관련 하위규정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실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는 201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추진 일정]

기간	추진내용
2017. 10월	○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신설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7. 11월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2017. 12월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 1~6월	○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사전 준비 ①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분석서 확정을 위한 사례연구 및 시범운영 실시 - 평가 제외법령 및 중요법령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 등 - 중요법령에 대한 개선권고의 방법 및 범위 마련 등 ② 법제처 등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 관련 중요기관 업무 협의
2018. 7~12월	○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사전 준비 ①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세부운영 절차 확정(평가 및 재검토 기간 등) ② 매뉴얼 마련 - 중앙행정기관 대상 매뉴얼 외 자치단체 대상 매뉴얼 마련도 검토·추진 ③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하위규정 마련 - 확정된 절차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풀 구축 등 준비
2019년	○ 고용영향평가 실시(2015년 공포 법령 2,552건, 2016년 2,557건)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개정법령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인력을 신규로 5명 확충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다.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인력별 담당 예정 업무 현황]

구 분	담 당 업 무
연구원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평가 기준 마련 총괄 - 사례 분석 연구 및 평가 기준(평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등) 마련 - 중요법령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 현행 전체 법령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 확정 필요
석·학사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사례 분석 연구 및 평가 기준 마련 지원 ○ 지자체 관련 업무 총괄 (컨설팅 기준 마련) * 지자체에서 자체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컨설팅 요청시
연구원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마련 총괄

구분	담당 업무
	-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세부 평가 절차 확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 ○ 중요법령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석·학사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마련 지원 ○ 중요법령 검토위원회 인력 풀 구성 지원 및 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연구인턴	○ 행정지원 및 자료수집 등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일정 상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연내에 입법이 완료 되더라도 고용영향평가 실시는 2019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8년도 관련 인건비 예산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기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각 185개 사업, 249개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2018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대상사업을 명시하여 1,000여개(전체 일자리사업, R&D·SOC·공공조달사업은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고용영향평가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평가는 아니며, 「고용정책기본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250여개에서 1,000여개로 확대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

또한 그 동안 이루어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등에 관한 평가가 선행되고 개선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 고용영향평가를 전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16.11)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가.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¹⁾ 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2.8% 증가한 324억원이다.

[2018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사회적기업 육성	27,889	19,868	19,868	32,350	12,482	62.8
모태펀드	0	0	0	10,000	10,00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이 100억원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예산은 2011~2014년 간 편성(매년 25억원)되었으나, 2015~2017년은 편성되지 않았다.

나. 분석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동일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투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모태펀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투자대상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2015년말 현재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자펀드)은 총 4개 조합, 총 182억원 규모로 결성되었는데, 제1호, 제2호는 투자가 종료되고 회수 중이며, 제3호는 2017년 11월까지, 제4호는 2019년 1월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7-301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투자 및 회수 기간]

조합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제1호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회수	회수	회수					
제2호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회수	회수	회수	회수			
제3호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회수	회수	회수		
제4호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회수	회수	회수	회수

자료: 고용노동부

각 투자조합별 투자 상황을 보면, 투자가 완료된 제1호와 제2호는 주목적투자 대상²⁾인 사회적기업 등의 투자 비중이 각각 60.7%, 60.0%이고, 투자 완료가 임박한 제3호는 주목적투자 비중이 60.0%로 목표 60.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제4호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등의 투자 목표 60.0%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성금액인 40억원 중 20억원을 일반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사회적기업 투자가능액이 20억원(50.0%)에 그쳐 의무투자 비중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³⁾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현황]

	제1호 (2011.6.22. 결성)	제2호 (2012.9.6. 결성)	제3호 (2013.11.27. 결성)	제4호 (2015.2.2. 결성)
명칭	미래에셋사회적 기업투자조합	미래에셋사회적 기업투자조합 2호	포스텍 사회적 기업펀드	CCVC 소셜벤처 투자조합
결성금액 (고용부/민간)	42억원 (25/17)	40억원 (25/15)	60억원 (25/35)	40억원 (25/15)
총투자/출자	40.5억원 / 42억원 (96.4%투자)	33.9억원 / 40억원 (84.8%투자)	57.0억원 / 60억원 (95.0%투자)	30억원 / 40억원 (75.0%투자)
투자 비중	주목적투자대상 25.5억원(60.7%) 일반중소기업 15억원(35.7%)	24.0억원(60.0%) 9.9억원(24.8%)	36억원(60.0%) 21억원(35.0%)	10억원(25.0%) 20억원(50.0%)

주: 2017년 9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 주목적투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육상사업 지원 대상 등 투자 대상 선정위원회 인정 기업이다.

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반중소기업에 투자한 3개 기업은 2018년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동일 업체에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투자운용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인 제1호와 제2호 조합에서 중복 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AA 업체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에서 각각 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BB 업체의 경우 각각 2.5억원이 투자되었고, CC 업체의 경우 각각 5억원이 투자되었다. 특히, DD 업체의 경우 다른 투자운용사가 운영하는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8억원, 12억원, 8억원이 투자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업체 중 중복업체 현황]

(단위: 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AA업체	● (2013년, 1억원)	● (2013년, 1억원)		
BB업체	● (2013년, 2.5억원)	● (2014년, 2.5억원)		
CC업체	● (2014년, 5억원)	● (2014년, 5억원)		
DD업체		● (2015년, 8억원)	● (2014년, 12억원)	● (2015년, 8억원)
전체 주목적 투자업체 수	8	6	4	2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 투자운용사⁴⁾가 좀 더 높은 수익률과 성과보수를 내기 위하여 일부 성과가 높은 기업에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취지가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초기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수익률에 치중하다 보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투자대상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4) 모태펀드 투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투자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구조이다.

가. 현황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¹⁾은 연체금, 급여징수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48.3% 증가한 3,217억원이다.

[2018년도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17,402	129,539	129,539	321,698	192,159	148.3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중 부당이득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항목의 증액 근거가 미흡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전년대비 148.3%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부당이득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항목의 증가율이 높다. 부당이득금의 수입 계획은 2017년 118억원에서 2018년 486억원으로 411.4% 증가했고,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항목은 2018년 신규로 1,424억원이 편성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산재보험기금 59-596

[2018년도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계획(A)	2018 계획안(B)	증감	
			B-A	(B-A)/A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29,539	321,698	192,159	148.3
연체금	47,279	48,780	1,501	3.2
급여징수금	32,917	32,586	-331	-1.0
구상금	37,451	37,249	-202	-0.5
부당이득금	11,818	60,435	48,617	411.4
체납처분비	69	219	150	217.4
과오지급금 등 회수	5	20	15	300.0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0	142,409	142,409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부당이득금의 경우 2018년 411.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최고보상기준 제도²⁾ 변경에 따라 부당이득금 수입이 한시적으로 급증한 2012년 증가율(408.1%)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2014~2016년) 부당이득금 수입의 평균 증가율이 96.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편성된 부당이득금 수입 계획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항목을 2018년 신규 항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기금 출연사업비 반납액과 지방관서의 과오지급금 회수액을 2018년 수입 계획에 신규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회계연도 이후에 회수되는 산재보험기금 출연사업비 반납액과 지방관서의 과오지급금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산에서만 기타경상이전수입에 편입하였으나,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예산안에서도 수입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⁴⁾

2) 피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데, 고액임금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산재근로자 상호간, 산재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액 제도를 2000년 도입하였다.

3) 산재보험제도의 최고보상기준액 제도가 2000.7.1. 도입되고, 최고보상기준 제도 시행일 이전 재해자의 최고보상 유예기간이 두어졌으나 유예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판결을 내리고 2008.7.1.부터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재해자에 대해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 대상자에 대해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평균임금 증감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최고보상기준액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2. 2. 23. 선고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차액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2012년 747건(360억원) 이루어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당이득금이 증가하였다.

4) 「국고금관리법」 제29조제2항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타항목은 2014년 3억 8,500만원, 2015년 5억 9,600만원, 2016년 3억 3,600만원 수준으로, 2018년에 1,424억원이 발생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수입 계획안은 과다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기타 항목 금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385	596	336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도 결산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기타 항목 내역]

(단위: 원)

내역	금액
2015년 이월예산 산재예방시설건립 집행잔액 반납	8,263,040
2015년 산재보험시설건립 16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반납	88,204,700
2009-2015 유해작업환경개선 집행잔액 반납	126,125,910
2015년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추가 반납	9,841,380
2015년 산재의료기관 평가 추가 반납	22,000
2015년 산재보험급여관리 추가 반납	11,000
2015년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추가 반납	11,891,440
2015년 사회심리재활지원 추가 반납	50,000
2015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추가 반납	5,104,630
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9조에 의한 유족특별급여)	40,000,000
2015년 이전 클린보조금 반납	45,033,380
전화가입비 반환	968,000
4대보험 과오지급분	830
출장여비 과오지급분	142,000
출장여비 과오지급분	20,000
합 계	335,678,310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산재보험기금 수입을 과다 추계할 경우 기금 재정수지 관리, 여유자금 운용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1) 및 92조, 동법 시행령 제67조2)에 근거하여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요양 종결 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재근로자 재활복지3)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2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의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평가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2-350

[2018년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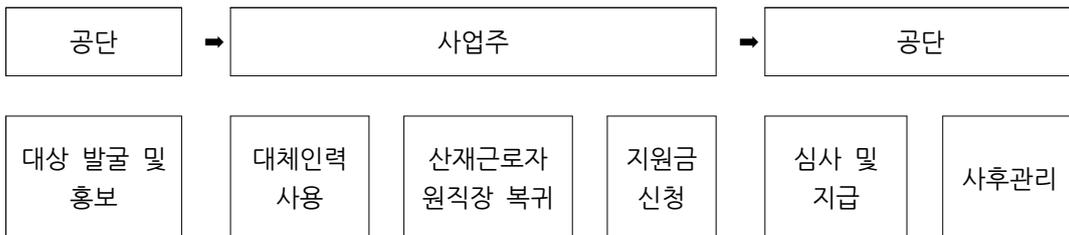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65,000	69,427	69,427	72,930	3,503	5.0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2,400	2,400	2,400	2,700	300	12.5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사업대상은 2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자이며, 사업주는 사용기간 동안(최대 5개월)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동 사업의 지원절차는 먼저, 공단이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사업주에게 우편안내문과 팩스 등을 발송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청하도록 홍보를 한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는 시점까지 사용하고,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면 지원금을 신청한다. 공단은 사업주 지급요건⁴⁾과 산재근로자 요건⁵⁾, 대체인력 요건⁶⁾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타 법령에 의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 4) 사업주 요건: 총 근로자 20인 미만, 산재보험료 체납여부, 대체인력의 산재 혹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대체인력 청구기간 동안 타 근로자 경영상 해고 여부
- 5) 산재근로자 요건: 요양 2개월 이상자 또는 장애판정자,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 6) 대체인력 요건: 재해발생일부터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여부, 채용일부터 산재복귀자 원직복귀 전일 또는 대체인력 퇴직일까지 30일 유지

나. 분석의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지원하는 대체인력의 실적치(기간, 인력 규모)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계획안에서는 900명의 대체인력이 평균적으로 5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여 총 27억원을 산출하였다.

[2018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금액	산출근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2,700	900명 × 3,000,000원(5개월 × 월 60만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동 사업 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의 예산집행 및 지원실적을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2016년과 2017년 예산은 800명의 대체인력이 평균적으로 5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급받는 것을 가정하여 24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2016년 결산결과, 대체인력 1,078명에게 총 19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고, 평균근무기간은 2.8개월(84.6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7년 8월 말까지 763명의 대체인력에 대하여 15억 3,700만원이 지급되었고, 평균 근무기간은 3.3개월로 분석되었다.

2016년과 2017년 8월까지의 실적을 종합해보면, 대체인력의 평균근무기간은 2016년은 2.8개월, 2017년은 3.3개월로 2018년 예산안에서 가정한 대체인력 근무기간 5개월보다 짧았다. 반면, 2016년의 대체인력은 1,078명이었고, 2017년 8월 누계치도 763명으로, 당초 계획치 8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의 실적치(기간,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인원규모와 평균 지원기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예산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금액	산출근거
2016	예산	2,400	800명 × 3,000,000원(5개월 × 월 60만원)
	실적	1,927	1,078명 × 1,787,569원(2.8개월 × 월 60만원)
2017	예산	2,400	800명 × 3,000,000원(5개월 × 월 60만원)
	8월 누계	1,537	763명 × 2,014,416원(3.4개월 × 월 60만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가. 현황

직장여성아파트운영사업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복지지원¹⁾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직장여성아파트운영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근로자복지지원	4,012	3,772	3,772	3,671	△101	△2.7
직장여성아파트운영	2,152	1,910	1,910	1,910	0	0.0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2018년 10월까지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민 퇴거시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예산을 지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준치평가에서 직장여성아파트 운영사업은 그동안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설치목적은 달성하는 효과가 감소했으므로 폐지를 권고하였다.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자 중 혼자 거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의 복지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2월에 직장여성아파트 운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0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01

월까지 입주민의 퇴거를 완료시킬 예정이며, 직장여성아파트 부지는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간 협업을 통해 행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전국 6개 지역의 820세대에 입주한 직장여성아파트의 보증금 8억 2,200만원을 2018년 10월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동 보증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타예수보증금으로 예치 중이다. 그런데, 직장여성아파트의 임대료수입은 기타잡수입(3억 3,900만원)에서 반영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여성아파트 운영비는 지출예산에 반영하였지만, 2018년 퇴거하는 입주자에게 반환할 반환보증금은 지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동 보증금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기타잡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잡수입	2,137	2,678	2,678	2,249	△429	△16.0
직장여성아파트 운영수입	1,186	1,285	1,285	339	△946	△73.6

자료: 근로복지진흥기금

가. 현황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학습병행 운영·지원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3억 2,100만원 증가한 95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96,444	129,531	129,531	134,674	5,143	4.0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	42,132	91,671	91,671	95,992	4,321	4.7

자료: 고용노동부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이 689억 9,200만원으로 동 지원사업의 71.8%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산출내역	예산액	비중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3,000기업 × 5백만원	15,000	15.6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6,300기업 × 60% + 3,200기업 × 80% + 3,000기업 × 50%) × 11백만원 × 지급율 80%	68,992	71.8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3,000기업 × 2백만원	6,000	6.3
전담인력 양성 교육	3,000기업 × 1백만원 × 2회	6,000	6.3
합 계		95,992	100.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0-356

나. 분석의견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의 연간 훈련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예산안은 대상기업의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에 대한 일정액의 지급수당을 연간 80%(12개월 중 9.6개월)비율로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2018년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대상기업(A)	지급수당(B)	지급률(C)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A×B×C)
6,300기업(2014~2016년 목표) × 60% + 3,200기업(2017년 목표) × 80% + 3,000기업(2018년 목표) × 50%	11 (기업현장교사 8, HRD담당자 3)	80	68,992

자료: 고용보험기금

기업현장교사는 훈련시작일로부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훈련이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므로, 2018년 예산안에서는 훈련기간을 12개월 중 80%인 9.6개월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매년 신규훈련을 기준으로 2014~2016년 동안 기업체별 훈련기간은 2014년 평균 2개월, 2015년 5개월, 2016년 7개월로 연간 훈련기간은 80%(9.6개월)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6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훈련의 경우, 다음 해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 동안 진행됨을 가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 기업체당 훈련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기업체별 훈련시작월 현황]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1	1	67	3	1	4	0	16	27	58	101	676
2015	121	65	419	96	58	116	137	78	310	311	289	924
2016	319	309	1,665	301	217	217	334	391	606	392	648	33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현황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은 기술전수 및 컨설팅 능력을 갖춘 우수 숙련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선정, 기술전수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 및 학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고 실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¹⁾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9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7,618	11,258	11,258	15,158	3,900	34.6
산업현장교수지원	11,130	9,879	9,879	9,879	0	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등 11개 분야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산업현장교수를 매칭한 후 공단, 산업현장교수 및 지원신청기관 3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한다.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지원요건, 내용, 분야]

구분	중소기업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 체납기업 제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현장교수의 기술전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대학 제외)
지원 내용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기술지원 인적자원관리 진단·지도 등	현장맞춤형 기술전수 기술동아리 운영 지원 등
지원 분야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건설, 디자인, 문화콘텐츠, HRD 등 총 11개 분야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0-350

동 사업은 2018년에 특성화고 155개교, 중소기업 1,080개 기업에 대하여 산업현장교수가 핵심기술 등을 전수할 계획이며, 예산안은 중소기업 기술전수가 87억 4,800만원(88.6%), 특성화고 지원이 11억 3,100만원(11.4%)이다.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예산안
특성화고	155개 강좌×7.3	1,131
기술전수	1,080기업×8.1	8,748
합 계		9,879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분석의견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전수 지원분야 중 문화콘텐츠, 섬유·의복 분야에서 연도별로 업체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속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이 지원하는 분야 중 2015년부터 추가된 문화콘텐츠, 섬유·의복, 디자인분야에서 연도별로 업체간 중복지원 비율이 높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섬유·의복 분야에서 동일업체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산업현장교수지원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디자인분야도 두 분야에 비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연속지원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문화콘텐츠분야에서는 2016년에 지원한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2017년에 연속지원을 받고 있다. 섬유·의복분야에서는 2016년에 지원된 9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2015년 혹은 2017년과 연속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섬유·의복분야에서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산업현장교수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참고로 섬유·의복분야에 선정된 산업현장교수는 2017년 7월까지 49명에 이른다. 이렇게 연도별로 동일업체가 동일한 산업현장교수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산업현장교수 지원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교수 문화콘텐츠, 섬유 의복, 디자인분야 연도별 중복 현황]

(단위: 개)

		2015	2016	2017
문화콘텐츠	중복지원	0	6	6
	지원업체수	0	10	11
섬유의복	중복지원	7	7	7
	지원업체수	14	9	17
디자인	중복지원	0	5	5
	지원업체수	0	14	19

주 1: 지원업체수 순수지원업체수를 의미함(동일기업 당해연도 2회 이상 지원을 하나의 지원으로 간주)

2: 중복지원은 2개년 혹은 3개년 중복지원을 의미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라서,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전수 지원분야 중 문화콘텐츠, 섬유 의복 분야에서 연도별로 업체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속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사업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갈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력고용지원¹⁾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2억 1,800만원 증가한 1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외국인력고용지원	2,569	2,441	2,441	2,441	0	0.0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1,560	1,482	1,482	1,710	218	14.7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안에서 증가한 2억 1,800만원은 외국인고용관리 EPS 현장 컨설팅 시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며, 동 사업은 소수업종(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에게 고용허가제 관련 노무관리 법 지식과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사업은 사업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해소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지원한 사업주와 외국인인 2013년에 58,818명이었지만, 이후 매년 12.6~17.1%씩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사업장내 애로지원서비스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0-355

[연도별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현황]

(단위: 명, %)

	2013(a)	2014	2015	2016(b)	2017	증감(b-a)
건설업	5,175	5,712	6,890	5,148	진행 중	△27
농축산업	4,002	4,731	6,088	6,498		2,496
서비스업	40	41	24	42		2
어업	365	439	407	492		127
제조업	49,236	38,855	27,834	23,862		△22,776
합계	58,818	49,778	41,243	36,042	30,000	△28,818
증감률	-	△15.4	△17.1	△12.6	△16.8	△38.7

주: 2017년 지원수는 계획치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2017년 동안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주 지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은 10% 미만이다. 동 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주는 2014년 90.7%에서 2017년 7월에는 96.2%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14년 9.3%에서 2017년 7월에는 3.8%로 급감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갈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는 사업자에 편중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내 애로해소 서비스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현황]

(단위: 명, %)

2014		2015		2016		2017. 7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45,237	4,641	38,945	2,298	34,276	1,766	19,022	756
90.7	9.3	94.4	5.6	95.1	4.9	96.2	3.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현황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¹⁾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1조²⁾(직업능력개발의 촉진)와 동법 시행령 제52조³⁾에 근거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마인드 형성 및 확산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기업체 HRD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7,618	11,258	11,258	15,158	3,900	34.6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	614	614	614	614	0	0.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⁴⁾의 사업주 및 HRD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HRD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 공단으로 이관되어 24개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 중이다.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내 HRD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지역 내 능력개발사업 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0-350

2)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들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근로자 수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사업 세부내역]

- 지역 내 HRD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 : 64백만원
- 중소기업 CEO(2~3시간) 및 HRD 담당자 연수(4시간) : 410백만원
- 지역 내 능력개발사업 협의체 운영 : 140백만원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분석의견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사업은 연수참여 기업이 공단의 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홍보를 통한 연계실적이 미흡하고, 참여인원이 감소추세이므로, 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올바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가 있다.

기업체 HRD 정보교류 및 협력지원사업의 최근 연수인원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HRD 담당자는 2013년 4,485명에서 2016년에는 3,168명으로 30%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동 사업이 연수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최신 HRD 트렌드 및 이슈) 등이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하여 획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현황]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EO	2,113	1,932	1,885	2,104	1,781	1,822
HRD담당자	3,313	3,445	4,485	3,684	3,294	3,168
합 계	5,426	5,377	6,370	5,788	5,075	4,99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또한, 동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5호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단의 주요 핵심사업인 사업주 훈련,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중소기업 능력개발사업의 홍보를 통한 연계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연수참여 기업이 공단 내 타 사업으로의 참여 실적이 미흡하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인원 확대를 포함하여 참여 기업의 공단 내 타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¹⁾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특성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의욕·능력 증진(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3억 5,500만원 증액된 14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0	11,010	11,010	14,365	3,355	30.5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1단계는 심층상담, 직업능력평가, 집단프로그램(구직역량강화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수당 지급을 지급한다. 2단계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3단계는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1~3단계에 걸친 수당과 사업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수당은 1단계 15억 1,200만원, 2단계 52억 1,400만원, 3단계 7억 1,300만원으로, 2단계 수당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2018년 예산안에서는 평균적으로 6개월(총 12개월까지 가능)의 훈련기간을 가정하여 2단계 참여수당을 산출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c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6-315

[2018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지원 금액 산출내역	수료인원	참여수당
1단계	참여 8,000명 × 수료율 90% × 단가 150,000원 + 집단프로그램 참가인원 7,200명 × 수료율 60% × 단가 100,000원	7,200	1,512
2단계	1단계 수료인원 7,200명 × 참여율 50% × 단가 284,000 × 훈련수료율 85% × 평균훈련기간 6개월 × 지급률 100%	3,060	5,214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수료 7,200명×참여율 55%×단가 300천원 ×평균참여율 50%×활동기간 3개월×청년비율 40%)	1,584	713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75%, 6개월 근속 50%, 12개월 근속 40%)	3,050	2,210
소 계			9,649
사업운영비			1,632
전문인력 인건비			3,084
합 계			14,365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분석의견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2017년 상반기 평균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는 2단계 참여수당을 산출함에 있어, 참여인원 중 85%가 평균 6개월의 훈련기간을 수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8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세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지원 금액 산출내역	수료인원	참여수당
1단계 수료인원 7,200명(8,000 × 90%) × 참여율 50% × 단가 284,000원 × 훈련수료율 85% × 평균훈련기간 6개월 × 지급률 100%	3,060	5,21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과거 경험치가 없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2017년 실적치가 2018년 예산안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적을 검토한 결과, 평균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2017년 7월 말까지 2단계 훈련에 참여한 인원 중 훈련종료자와 미종료자 비율 및 평균훈련기간을 검토하였다. 2단계 참여인원 중 훈련을 종료한 인원이 1,416명(43.9%), 훈련을 진행 중인 인원이 1,808명(56.1%)이다. 2017년 7월까지 훈련을 종료한 인원의 평균훈련기간은 49일(1.63개월)이었다.

[2017년 2단계 참여자 세부현황]

(단위: 명, %)

	참여인원 (a)	훈련종료자 (b)	평균 훈련기간	훈련종료자 비율(b/a)	훈련진행자(c)	훈련미종료 비율(c/a)
2017.7월	3,224	1,406	49일(1.63개월)	43.9	1,808	56.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단계 기간이 1개월 소요되고 사업시작이 빨라도 3월 이전에 실시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4월부터 훈련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훈련신청자가 연말까지 8개월의 훈련기간이 소요된다. 상반기 신청자 중 훈련종료자(43.9%)의 훈련기간이 1.63개월이고, 훈련미종료자(56.1%)의 훈련기간은 8개월로 가정하여 평균훈련기간을 추정한 결과는 5.2개월이었다. 하반기(7월) 참여자는 1단계에 1개월이 소요됨을 가정하고, 신청자는 연말까지 훈련을 받는다고 가정하여도 5개월이 최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중 2단계사업의 2017년 훈련기간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2단계 훈련 상반기 참여자 평균 훈련기간 추정]

(단위: 명, 개월, %)

훈련종료자	훈련기간	전체 신청자 중 비율	훈련진행자	최장 훈련기간	전체 신청자 중 비율	평균훈련기간 추정치
1,416	1.63	43.9	1,808	8	56.1	5.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현황

생애설계서비스사업¹⁾은 장년에 진입하는 40대부터 생애경력진단 및 설계 기회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8,500만원 증액된 1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애설계서비스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장년층 취업지원	31,558	23,673	23,673	25,086	1,413	6.0
생애설계서비스	1,000	1,550	1,550	1,935	385	24.8

자료: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 준비 등 중장년근로자의 생애경력설계를 위한 능력향상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은 기초과정(6시간), 심화과정(6시간) 외에 건강(노화예방, 건강유지), 재무(자산관리), 여가(여가정보 제공), 관계(소통과 갈등극복)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 19억 3,500만원은 25,000명에게 평균서비스단가 77,5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사업의 대상인원은 2016년 이전에는 1만명, 2017년에는 2만명(재단 14,000명), 2018년에는 2.5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 고용보험기금 1347-35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안
예산액	1,000	1,000	1,550	1,935
서비스 대상인원 목표	10,000	10,000	20,000	25,000
서비스 대상인원 실적	9,736	12,576	11,914	-

주: 2017년 실적은 8월까지 누계이며, 2017년부터 전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 목표인원은 14,000명임.

자료: 노사발전재단

나. 분석의견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과정(개인일반과정, 구직자 과정)과 기업과정(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17년 8월까지 누계기준으로, 개인과정은 전체 참여자의 40.1%를 차지하는 등 2016년 19.0%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중은 48.0%로 전년도 67.4%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이렇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인원이 많은 원인은 동 서비스 참여가 사내 이수교육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개인 (개인일반+구직자)	기업과정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2016	인원	2,385	1,709	4,125	4,357	12,576
	비율	19.0	13.6	32.8	34.6	100.0
2017.8	인원	4,774	1,414	3,038	2,688	11,914
	비율	40.1	11.9	25.5	22.5	100.0

자료: 노사발전재단

개인과정의 확대와 기업과정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중 축소는 보다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업과정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6년에 13.6%이었지만, 2017년 8월 누계는 11.9%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직자 교육(생애설계)에 대한 인식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베이비부머 대량 퇴직 등 장년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년층 취업지원¹⁾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2,900만원 증액된 18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장년층 취업지원	31,558	23,673	23,673	25,086	1,413	6.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7,647	17,720	17,720	18,949	1,229	6.9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전국의 31개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중장년 전직지원·재취업서비스 제공(퇴직자 대상의 재도약프로그램, 전직스쿨),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 장년고용지원 등이다.

나. 분석의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은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직스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직스쿨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측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전직스쿨은 대량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 담당자(인사, 교육담당자)의 전직스쿨 프로그램 요청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업체 혹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7-352

2016년도 기업규모별 전직스쿨 참여인원은 총 4,510명이며, 이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2,391명이고, 1,000명 이상의 기업체 참여인원이 1,255명이다. 전직스쿨 참여인원의 80%를 공공부문과 대기업 퇴직(예정)자이다. 퇴직예정시기가 40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정년이 60세인 공공부문에 대한 전직스쿨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동 사업이 지향하는 바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공기업 비율을 줄여나가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비율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별 전직스쿨 서비스 인원 현황]

(단위: 명, %)

	30명 미만 기업	30명~ 99명 기업	100명~ 299명 기업	300명~ 999명 기업	1,000명 이상 기업	공공 부문	합계
2014	0	123	177	32	210	659	1,201
	0	10.2	14.7	2.7	17.5	54.9	100.0
2015	30	75	102	219	499	1,525	2,450
	1.2	3	4	8	20	62	100
2016	60	176	302	326	1,255	2,391	4,510
	1.3	3.9	6.6	7.2	27	53	100

자료: 노사발전재단

한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제공하는 전직스쿨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업종, 직종,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4시간에서 18시간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연도별 서비스 인원은 집계는 되지만,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인원과 재취업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전직스쿨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성과측정 방안(서비스 만족도, 전직준비도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한국잡월드 운영¹⁾사업은 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급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9,600만원 증액된 19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잡월드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잡월드 운영	11,895	14,357	14,357	19,253	4,896	34.1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는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은 연례적으로 관람객 수와 광고수입을 과다 추정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연도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잡월드는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총지출액 중 자체수입을 차감하여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이다. 한국잡월드의 합리적인 자체수입 추정은 출연금 예산의 적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잡월드의 연도별 자체수입 예산과 결산을 비교한 결과, 예산 대비 결산의 달성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049-301

률이 2014년에 89.7%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는 82.6~84.7%로,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결산액이 124억 3,200만원으로 예산의 84.7%에 불과하지만, 2018년 예산안에서는 2016년 예산보다 6.35% 증가한 155억 9,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예산안 내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2018
예산	13,787	15,662	15,355	13,045	14,677	14,419	15,596
결산	8,268	11,525	13,775	10,774	12,432	8,001	진행중
달성률	60.0	73.6	89.7	82.6	84.7	55.5	

주: 2017년은 7월까지 누계임.

자료: 한국잡월드

한편,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시체험관 관람객 수는 2012년 개관한 이후 2017년 7월까지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관람객 수 및 자체수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관람객 수	561,639	838,146	777,070	717,154	752,100	366,021
-청소년관	313,932	489,614	441,964	402,762	404,898	188,861
-어린이관	206,435	296,032	300,501	287,647	316,431	164,924
-관람	41,272	52,500	34,605	26,745	30,771	12,236
자체수입 (실적기준)	8,268	11,525	13,775	10,774	12,432	8,001

주: 2017년 자료는 7월 말까지 누계임.

자료: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의 관람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기인한다. 한국잡월드의 고객인 학령인구는 개관 이래 연 2%대씩 하락추세로, 체험시장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전남, 강원 등)에 직업체험관이 설립되면서 그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하던 관람객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원 감소 현황]

(단위: 천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학령인구수	9,590	9,397	9,181	8,920	8,670	8,461
전년대비 증감	0.0	△2.0	△2.3	△2.8	△2.8	△2.4

자료: 한국잡월드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예산은 매년 증액되어 예산안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자체수입 추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사업¹⁾은 직업능력개발담당자(훈련교사, 기업현장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등) 양성,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출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464억 4,400만원에서 83억 2,100만원(17.9%)이 증액된 54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사업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1,600만원(0.9%)이 증액되어 24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사업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원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목적의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46억 4,700만원(33.1%)이 증액되어 18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은 직업능력 온라인훈련 콘텐츠 개발과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34억 5,800만원(42.4%)이 증액되어 11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43,012	46,444	46,444	54,765	8,321	17.9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23,500	24,236	24,236	24,452	216	0.9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13,701	14,060	14,060	18,707	4,647	33.1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6,020	8,148	8,148	11,606	3,458	42.4

자료: 고용노동부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고용보험기금 1152 - 350

나. 분석의견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사업의 과거 교육 인원 실적과 실집행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인정기준을 산업현장의 수요와 훈련실적, 미래유망직종 전망 등을 반영하여 NCS²⁾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훈련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분야에 대한 역량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³⁾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능력개발교육원 연수 과정은 HRD 역량(교육훈련, 취업관리 등)과 전공역량(직종별 현장 필수 능력)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직원훈련과정과 대상 인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동 과정의 2018년도 전체 교육인원 목표는 2017년 20,086명 대비 7,328명이 증가한 27,414명이다. 교육목표인원이 증가한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교수기법훈련과정’은 2017년 교육목표 인원이 9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528명으로 2,438명이 증가되었다. 그 외 ‘진로지도상담훈련과정’은 2017년 150명에서 2018년 1,040명, ‘능력개발담당자재훈련과정’은 2017년 1,100명에서 2018년 4,098명, ‘교직원훈련과정’은 2017년 900명에서 2018년 1,500명, ‘첨단신산업분야 기술훈련과정’은 2017년 1,800명에서 2018년 3,600명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2018년에 교육목표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46억 4,700만원(33.1%)이 증액되어 18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도별로 예산안 규모를 산정할 때 교육목표 인원에 1인당 교육비용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연례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교육비용 단가 산정에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1인당 교육비용 단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2)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3) 훈련교사는 연간 50시간 내외(전공 30H, HRD 20H)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이수자의 훈련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 2016.10.25.)

4) 고용노동부는 2018년 일부 세부교육과정에서 목표인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1인당 교육비용 단가를 삭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도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사업 교육목표인원 전년대비 비교]

(단위: 명, 개, 백만원, %)

구 분	2017년 목표인원 (A)	2018년			증감		
		목표인원 (B)	단가 (C)	예산안 (B×C)	(B-A)	(B-A)/A	
재직교원 직무능력 향상연수	교직원훈련과정	900	1,500	0.564	846	600	66.7
	향상훈련과정	180	200	0.790	158	20	11.1
	진로지도상담훈련	150	1,040	0.134	139	890	593.3
	교수기법훈련	90	2,528	0.214	541	2,438	2,708.9
	교육훈련기관장훈련	250	250	0.136	34	0	0
	능력개발담당자재훈련	1,100	4,098	0.214	877	2,998	272.5
	폴리텍교원 위탁교육훈련	220	220	0.309	68	0	0
	스타훈련교사 운영	20	20	1.250	25	0	0
	NCS NCS활용연수	13,000	10,000	0	3,160	△3,000	△23.1
	활용훈련 NCS컨설팅기관	30	50			20	66.7
	연수사업운영비 등	0	0	0	85	0	0
소 계(인원)	15,910	19,856	0.299	5,933	3,946	24.8	
재직교원 신기술 연수	해외전문가초빙	16	16	13.88	222	0	0
	기간(뿌리)산업 기술훈련	1,300	2,382	0.462	1,101	1,082	83.2
	신기술향상훈련(현장직무훈련)	1,000	1,500	1.755	2,633	500	50.0
	교원신기술향상연수	13	13	5.692	74	0	0
	연수담당능력향상	47	47	0.979	46	0	0
	연수사업운영비 등	0	0	0	1,174	0	0
	소 계(인원)	2,376	3,958	1.326	5,250	1,582	66.6
첨단신산 업분야 인력양성	첨단신산업분야기술훈련	1,800	3,600	0.650	2,340	1,800	100.0
	첨단신산업분야장비비	14	14	0.074	1040	0	0
	첨단교육훈련장비개발비	3	3	0.106	318	0	0
	연수사업운영비 등	0	0	0	1,145	0	0
	소 계(인원)	1,817	3,617	1.339	4,843	1,800	99.1
직업훈련신교수법	0	0	0	646	0	0	
교육원 실험실습장비비	0	0	0	100	0	0	
훈련교사용 이러닝콘텐츠개발	0	0	0	407	0	0	
훈련교사용 가상훈련시스템개발	0	0	0	628	0	0	
합 계(인원)	20,086	27,414	0.682	18,707	7,328	36.5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즉, 2016년도 일부 교육과정에서 예산 편성시 적용한 평균 1인당 교육비용단가가 집행 예산을 실제 교육인원으로 나눈 실적대비단가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예를 들면, ‘교직훈련과정’의 경우 예산 편성시에는 1인당 44만원의 교육비용을 산정했지만, 실제 교육인원과 집행예산으로 볼 때 1인당 27만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56만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향상훈련과정’의 경우는 예산 편성시에 1인당 60만원의 교육비용을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66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8년 예산편성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1인당 79만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2016년도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사업 교육목표 대비 실적 비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년						2018년	
		계획			실적			예산안	
		목표 인원 (A)	1인당 비용단가 (B)	예산 (C=A×B)	실교육 인원 (D)	실집행액 (E)	실적대비 1인당 비용단가 (E/D)	1인당 비용단가	
재직교원 직무능력 향상연수	교직훈련과정	450	0.44	199	953	254	0.27	0.564	
	향상훈련과정	90	0.60	54	108	71	0.66	0.790	
	진로지도상담훈련	150	0.09	14	203	20	0.10	0.134	
	교수기법훈련	90	0.42	38	150	41	0.27	0.214	
	교육훈련기관장훈련	250	0.09	23	335	34	0.10	0.136	
	능력개발담당자재훈련	1,100	0.28	304	1,617	341	0.21	0.214	
	플리텍교원위탁교육훈련	220	0.31	68	236	68	0.29	0.309	
	스타훈련교사 운영	20	1.25	25	24	25	1.04	1.250	
	NCS 활용 훈련	NCS활용연수	15,000	-	3,160	16,699	3,136	-	-
		NCS컨설팅	20	-	-	21		-	-
	연수사업운영비		0	0	206	0	186	-	-
	소계(인원)		17,390	0.24	4,091	20,346	4,047	0.20	0.299

5) 2016년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결과 137억원 예산으로 20,996명을 교육할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3,105명 (14.7%)을 초과하여 24,101명을 교육했고, 2016년 결산결과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불용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6년						2018년
		계획			실적			예산안
		목표 인원 (A)	1인당 비용단가 (B)	예산 (C=A×B)	실교육 인원 (D)	실집행액 (E)	실적대비 1인당 비용단가 (E/D)	1인당 비용단가
재직교원 신기술 연 수	해외전문가초빙	16	13.9	222	16	222	13.88	13.88
	기간(뿌리)산업기술훈련	1,300	0.37	483	1,566	601	0.38	0.462
	신기술향상(현장직무훈련)	450	3.90	1,755	546	1,755	3.21	1.755
	교원신기술향상연수	13	5.70	74	19	74	3.89	5.692
	연수담당능력향상	47	0.98	46	47	46	0.98	0.979
	연수사업운영비, SW구입	0	0	672	0	639	-	0
	소계(인원)	1,826	1.79	3,276	2,194	3,243	1.48	1.326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만, 세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소요 비용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비용이 1인당 교육비용 단가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례적으로 계획했던 교육목표 인원보다 실제 교육인원이 초과 달성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⁶⁾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세부교육과정별로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감소될 수 있는 공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1인당 교육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따르면 일반 강의식 교육의 경우에 교육 여건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1 강좌당 수강 인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교육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상청

1

현황

2017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는데, 세입(총계 기준)은 2017년 68억 8,700만원 대비 23억 3,200만원(33.9%) 증액된 92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¹⁾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497	6,887	6,887	9,219	2,332	33.9

주: 총계 기준
자료: 기상청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 3,853억원에 대비하여 117억원(3.0%) 증액된 3,97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96,156	385,276	385,276	397,014	11,738	3.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상청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기상청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총계 및 총지출 규모는 동일하다.

기상청의 2018년도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 6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은 폭염 및 침수분야 자연재해 영향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재해영향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개발은 지진활동 정밀분석을 통하여 입체 지진분포도, 지하단층 구조모델, 한반도 3차원 속도구조 통합모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모델개발은 기상이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상정보와 산업 및 생활부문 각종 정보를 융합한 기상서비스 수요 및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기상사업자 및 관련업체의 참여로 먼저 발굴·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기상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기상청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750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1,500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R&D)	3,000
합 계		6,250

자료: 기상청

2018년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 ②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③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구축·운영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다.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용 소형 X-밴드 레이더 임차료 16억원의 신규 반영으로 전년대비 41.8% 증액되었다.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은 발사분담금과 보험료의 대폭 증액(107억원)으로 전년대비 54.3% 증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구축·운영의 경우,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어 2018년에는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공사비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686.4% 증액되었다.

[2018년도 기상청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 회계 (3개)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 레이더 활용기술개발(R&D)	2,431	2,431	3,446	1,015	41.8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기상청)	14,738	14,738	22,738	8,000	54.3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 시설구축·운영(R&D)	294	294	2,312	2,018	686.4
	합 계	17,463	17,463	28,496	11,033	63.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라 기상(지상 및 수상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영향예보로의 전환 및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등 선제적 지원 ② 일자리 창출(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및 ICT 기반 확충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 예산안 편성상의 특징은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상산업활성화 등 영향예보와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반면, 연차소요, 통합재정자율평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적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지레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과 국가태풍센터 운영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을 종료한 점에 있다.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은 2015~2017년간 지진관측장비의 도입·설치가 지연되고 도입된 장비에 대한 성능 검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여 조기발주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지진관측장비 성능 검정체계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 사이에 기술개발단계에 대한 이견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재선정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18년 예산의 조정이 요구된다.

셋째,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사업 이외에 비연구개발 성격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태 기후정보서비스와 연구개발사업 중 공적개발 원조사업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본래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에 그 역할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비 예산 조정 필요

가. 현황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¹⁾은 황사·집중호우·태풍·대설과 같은 계절별 위험기상 감시,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 대기 상층에서의 환경기상 감시, 인공증우·인공증설 등 기상조절기술 실험연구를 위하여 기상장비를 탑재한 다목적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900만원 증액된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395	2,371	2,371	2,580	209	8.8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0	0	0	0	0	0.0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349	2,311	2,311	2,520	209	9.0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라 2016~2017년간 구매하여 사용하지 못한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운영비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2015년 도입을 목표로 2013년 (주)대주 ENT와 미국 Beechcraft사의 KingAir-350 항공기에 기상장비 14종 26개를 탑재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

(2013. 5. 21~ 2015. 11. 6)하였으나, 국내 형식승인 각하 및 미국 비행인증시험 절차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었다.1) 2017년 10월 현재 항공기 무선국 준공검사,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및 국내 등록을 완료하고 기상청의 검사·검수검사 후 10월 중 국유재산 등록 및 항공기 운영부서로의 이관 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행 예정에 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5,600	0	479	6,079	2,426	3,653	0
2016	0	3,653	0	3,653	0	3,653	0
2017	0	3,653	0	3,653	-	-	-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과 별도로 이의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비를 포함한 운영사업비를 편성 집행하여 왔다.2)

2017년 기상청은 ㈜스펙코어와 다목적 기상항공기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년 8월 현재 예산현액 42억 2,200만원 중 위탁사업비와 부대경비 26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다. 향후 드롭존데3)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3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시킬 예정에 있다.

1) 기상청과 ㈜대주ENT 계약에 의하면 기상장비의 탑재를 완료한 후에 부가형식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주ENT는 도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으로 기상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부가형식 증명을 바탕으로 국내에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반입하여 통관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어 미국으로 반송되었다. 2016년에는 보완된 사업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재개조가 이루어졌으나 미연방항공국의 비행인증시험이 지체되어 2017년 9월 3일에 국내에 반입되었다.

2) 2015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16억 4,000만원의 운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위탁사업 계약이 연도 중에 체결되는 관계로 위탁사업비 9억 3,2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운영사업비는 불용 또는 이월되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의 과거 사업상의 문제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용역' 대가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3회에 걸쳐 설정되어 결국 2016년 위탁사업비 19억 1,1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영사업비 중 드롭존데 등 소모품 및 탑재장비 보정기기 구입비 3억 4,9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3) 드롭존데(Dropsonde)는 기상 관측 기계의 하나로 발사 전파의 파장 또는 그 신호가 기온이나 기압 등에 의해 변화하게 구성된 무선 송신기를 항공기에서 투하하고 그 전파를 지상에서 수신하여 고층 대기 중의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5	1,640	-	1,161	474	246	458
2016	2,722	246	2,968	349	1,911	708
2017	2,311	1,911	4,222	2,682	-	-

주. 2017년에는 위탁운영비 17억 8,900만원, 전년도 위탁사업자 위탁운영비 8억 6,400만원 그리고 부대경비 2,900만원이 집행

자료: 기상청

2018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19억 600만원의 위탁운영비, 3억 2,100만원의 항공관측비행 소모품 구입비 등 25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이 중 항공관측비행 소모품 구입의 경우 드롭존데 247개를 구입할 예정이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안
기상항공기 위탁운영 용역비	1,906
항공기와 탑재장비 보험료	273
관측자료 지상수신 비용	20
항공관측비행 소모품	321(드롭존데 247개)

자료: 기상청

그러나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국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2016~2017년간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드롭존데 등의 소모품 구입을 위한 집행이 있어왔고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 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8년 예산에 포함된 드롭존데 등 항공관측비행 소모품 구매비는 기존 재고 물량과 내년도 소모품 추가 소요량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4)

4) 드롭존데의 경우 2016년 구매분 245개와 2017년 구매 예정분 200개 등 445개의 재고품이 있는 상태이다.

가. 현황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¹⁾은 지진관측장비의 구입·설치·운영과 국가지진종합시스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진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원 감액된 177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의 내역사업인 지진관측망 구축 및 개선은 지진계 신설, 노후 지진계 교체, 노후 지진해일관측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54개 지진계 신설, 23개 노후 지진계 교체, 1개 노후 지진해일관측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된 12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1,977	20,266	20,266	17,766	△2,500	△12.3
지진관측망 구축 및 개선	8,300	12,376	12,376	12,610	234	1.9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지진관측장비 도입·설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도입되는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첫째, 2014~2017년간 동일 계약자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연례적인 지진관측장비 도입·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조기 발주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238-301

2014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도입사업 개선대책이 7월에 수립되어 조달청 공고 및 계약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지진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계약이 2015년 2월(2015.2.10.~2015.9.13.)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지진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사업비 36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15년에는 2014년 이월분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 9월 이후 당해연도 지진관측장비 구입계약(2015.10.16.~2016.5.18.)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진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비 23억 7,5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사업물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017년의 경우 3월에 조달청 계약 발주를 추진했지만 도입계약이 8월(2017.8.25.~2018.4.17.)에 이루어지고 2018년 4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진관측망 확충 및 교체 실적]

(단위: 개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안)
관측소 신설	-	19	5	6	54	54
노후 장비교체	-	11	20	19	16	23
관측소 누계	177	195	200	206	260	314

자료: 기상청

2018년의 경우에는 신규 지진관측장비 54개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장비 23개 등 총 77개 장비의 도입·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2015~2017년간 사업추진 실적부진과 이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문제가 2018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발주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도입되는 지진관측장비의 성능시험을 위한 검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여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한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기상청장에게 지진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를 설치하고 이들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11조는 이를 위하여 지진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하고 있다.¹⁾²⁾

동 법은 비록 기상청이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검정기관 지정방법, 제작업체나 수입업체의 성능시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4~2017년간 10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진관측장비 시험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지만 동 장비를 기상청 내부에 설치하지 못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설치하여 용역계약을 통하여 동 연구소가 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을 위한 용역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명	협약기간	협약일	협약방법	예산액	계약액
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최적 기법연구	2017.4.15. ~ 2018.12.31	2017.4.15	공모과제	400	400

자료: 기상청

그러나 법령에 따른 지진관측장비 검정기관이 아닌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한 장비의 성능시험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체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 1)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 현황

연직바람 관측장비¹⁾ 융합기술개발²⁾은 아직 국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고층 기상관측용 연직바람 관측장비 기술 및 검증체계를 개발하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700만원 증액된 1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	900	900	1,057	157	17.4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주관연구기관 미선정 등 연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2018년 출연금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은 연직바람관측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 2017~2021년간 기상청-방사청간 부처연계 민·군협력기술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협력사업을 위하여 2017년 3월 민군협력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를 거쳐 5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 1) 연직바람 관측장비는 전파를 발사하여 목표물에 의해 다시 반사되어 오는 전파속도를 수신하여 수평 및 수직방향의 바람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 장비의 일종이다.
- 2) 코드: 일반회계 3133-306

그러나 2017년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민군협력진흥원간 기술개발단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약을 포기하게 되었다.¹⁾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공모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선정 평가가 2017년 9월 실시되어 (주)알에프코어가 새로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이 다시 선정되어도 새로 선정된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집행계획이 승인되고 협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향후 절차를 감안할 때, 2017년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출연금 예산은 상당 부분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8년 사업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7. 9	900	-	900	-	-	-

자료: 기상청

따라서 2017년 예산이 9개월분 연구개발비이고 2018년 예산안이 10개월분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 연말 이전에 동 사업이 정상화되더라도 해당 사업비 상당부분의 이월이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 연구개발비 예산의 이월액 규모를 감안하여 2018년 사업비는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1) 기술개발단계는 1. 기초 이론/실험, 2.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등 개념정리, 3.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5. 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 파일럿 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9.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개발 5단계인 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등 응용단계까지 그리고 민군협력진흥원은 이 연구를 발전시켜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등 8단계인 시제품의 개발단계까지를 요구하였다.

가. 현황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¹⁾의 내역사업인 연구용 레이더 신기술 선행 연구 및 현업지원 기술개발은 연구용 소형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하여 대형 레이더의 저층 기상관측 공백지역(고도 1km 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 규모 위험기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용 레이더 운영기술 개발과 연구용 레이더 선행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연구용 레이더 운영기술개발 2억 2,600만원과 연구용 소형레이더 설치·유지를 위한 임차료 16억원 등 18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연구용 소형레이더 임차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 레이더 활용기술개발	2,005	2,431	2,431	3,446	1,015	41.8
연구용 레이더 신기술 선행연구 및 현업지원 기술개발	0	811	811	1,826	1,015	125.2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당초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연구용 소형레이더의 조속한 이전을 통하여 도입목적인 수도권 국지 규모 위험기상관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에 있어서 대형 기상레이더의 저층 관측공백지역(고도 1km 이하)에 대한 국지 규모 위험기상 조기탐지 선행연구를 위하여 연구용 소형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133-304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몇 차례 사업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결과 소형기상레이더 설치 지역이 당초 인천(기상대), 평창(선자령), 안산(황금산)에서 무안, 군산(오성산), 평창 황병산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9월에서야 변경된 지역에 소형기상레이더의 설치를 완료되었다.²⁾

이에 따라 2016년도로부터 연구용레이더 설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던 임차료(4억원, 1/4분기 분)를 2017년 9월 집행하였고, 2017년도 말 결정될 수도권 서부지역 3개소에 해당 레이더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 사업이 당초 계획된 지역에 소형레이더를 설치하지 못함에 따라 원래 연구용 소형레이더의 도입 목적인 “수도권 서부지역의 국지 규모 위험기상 조기감시”와는 달리 “대형 기상레이더 자료와의 비교관측” 또는 “구형 소형레이더와의 비교관측” 등 당초 연구목적과는 다른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장비 이전에 따른 추가 사업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전설치지역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구용 소형레이더의 수도권 이전을 통해 당초 의도한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용 소형레이더 설치 과정에서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2015년 7월 기상청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레이더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소형레이더 임차료(4억원)는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이후 2016년 8월 ㈜아이비케이와 소형레이더 리스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장비도입 및 설치기간 소요로 인해 2016년도 임차료 예산(4억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2017. 9. 15)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초 소형레이더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던 인천 지역(주거 밀집지역 설치에 따른 전자파 인체 유해성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 반대 문제가 발생) 및 안산 황금산 지역(황금산개발계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곤란)에 설치가 곤란해짐에 따라 “소형기상레이더 관측망 설치지점 타당성 연구” 용역(2017.1.~12.)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기존에 이미 기상관측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던 무안, 군산 및 평창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였고, 향후 2017년 12월까지 수도권 지역 3개소를 선정하고 2018년에 설치된 레이더를 이전할 계획이다.

가. 현황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¹⁾은 기상이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상정보와 산업 및 생활부문 각종 정보를 융합한 기상서비스 수요 및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기상사업자 및 관련업체의 참여로 먼저 발굴·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기상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신규로 3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	-	-	3,000	3,000	순증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기상사업자의 적극적 참여와 개발된 기상서비스의 수요처 확대를 위한 보다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이 기존의 기상기후 정보 생산 및 활용사업과 다른 점은 기상청이 아닌 민간 기상사업자에 의해 신규 기상서비스 수요가 발굴되고 개발됨으로써 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기상정보와 융합할 수 있는 농림, 관광, 수산, 도로부분에 필요한 기상서비스를 개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138-302

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상관련 현상에 대한 지수를 선정·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사업의 경우, 지역기상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지역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의 수요에 따른 특화된 기상-산업 융합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은 동 기술원이 기상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해당 업종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은 기상서비스 수요가 관계기관이나 지방기상청의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되고 동 서비스의 개발이 기상청에 의해 직접 또는 위탁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일반국민이나 해당 업종 기업체에 제공되는 반면,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의 경우, 신규 기상서비스 수요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의 사업화 등이 민간 기상사업자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해외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및 활용 사례]

개발업체	융합모델	활용분야
Planalytics(미국)	산업정보 + 기상기후 전망	49개주 Kohl's 백화점 1,067개 체인점에서 소매상품 판매기획 및 마케팅에 활용
Weather Trends360(미국)	산업정보 + 6개월 장기예보	판매량 및 생산량 의사결정에 활용
Coca-Cola Company(미국)	산업정보 + 전세계 35개국 날씨정보	선호음료, 공급량, 마케팅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
Halex(일본)	전력, 관광 정보 + 날씨정보	전국 1,900개 골프장 날씨정보 제공 등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러나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상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데, 국내 기상산업체 분포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435개 기상산업 업체 중 14.0%에 해당하는 61개 업체만이 실질적으로 기상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수 있는 기상예보(25개 업체), 기상산업 컨설팅 및 서비스 업종(36개 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날씨경영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13~2017년

간 670회의 날씨경영 교육과 166회의 날씨경영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날씨경영 시스템을 실제 구축한 사례는 17개 기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로 추진되는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민간기상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기상서비스 개발에 앞서 보다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회원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8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1,600만원 증액된 9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²⁾은 선진기상기술 공여로 개도국의 기상서비스 발전과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민간대행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1,400만원 증액된 3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7,750	8,428	8,428	9,144	716	8.5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	2,867	2,964	2,964	3,278	314	10.6

자료: 기상청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3133-304

2) 코드: 일반회계 6132-302

나. 분석의견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사업 이외에 공적개발원조사업 성격의 비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로 한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태지역 기후협력 네트워크 강화, 피지 상해 가뭄 예측시스템 개발 및 구축, 통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개발 및 현지화 등 공적개발원조사업 성격의 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안
아태지역 실시간 고품질 기후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4,137)	기후예측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 품질개선(1,800)
	기후서비스 대응정보 생산체계 구축(1,200)
	아태지역 기후변화 자료제공시스템 선진화(1,137)
지역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2,500)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900)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1,600)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태지역 기후정보 서비스(1,300)	기후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600)
	아태지역 기후협력 네트워크 강화(700)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1,207)	태평양 도서국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강화(507)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복원력 향상 기술개발(700)

자료: 기상청

비록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이 2013년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사

1)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사업과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즉,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피지 통합해안범람 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해당 국가 관리자 교육 등 사업내용에 있어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2018년 일몰대상사업으로, 일몰시점을 준수함으로써 비 연구개발 성격의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사업의 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안
프로젝트 역량강화 지원(2,610)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1,462)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몽골, 1,148)
WMO를 통한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470)	통합해안범람예보시스템 구축사업(피지, 470)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개도국 교육훈련 지원(198)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250)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 중 공적개발 원조 성격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는 본래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에 그 역할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기상산업활성화 사업¹⁾은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비와 기상산업활성화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91억 4,500만원 대비 5억 1,800만원(5.7%) 증액한 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기상산업활성화 사업비는 2017년도 예산대비 3억 9,700만원(14.1%)이 증액되어 32억 1,800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비는 2017년도 예산대비 1억 2,100만원 증액된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산업활성화	8,538	9,145	9,145	9,663	518	5.7
기상산업활성화 사업비	2,537	2,821	2,821	3,218	397	14.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6,001	6,324	6,324	6,445	121	1.9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관운영 출연 예산이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기관운영 지원 예산의 심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2)에 근거하여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명: 일반회계 1431-301

2)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은 동 법 제17조5항에 따른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상청 대행업무사업³⁾으로 장비구매,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사업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운영비의 출연 또는 보조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일반재정사업과는 다르게 기획재정부 각 소관 과와 기금운용계획과의 검토와 심의를 통해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예산을 지원하면서 세부사업단위인 ‘기상산업활성화’ 아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타 부처 유사기관 예산지원 현황 비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분야		환경산업	문화산업	기상산업
소관부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예산 편성	프로그램	환경보전기반육성	콘텐츠산업육성	기상서비스 진흥
	단위사업	출연사업	문화산업기관 지원	기상산업진흥
	세부사업	환경산업기술원 출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지원형태		출연	보조	출연
지원근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 환경R&D 기획·평가관리 · 환경산업육성 및 수출지원, 전문인력양성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환경마크·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 · 친환경제품 생산유통구매 촉진 · 기업 친환경·탄소경영 활성화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문화산업진흥 R&D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 유통활성화 ·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문화산업활성화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산업 시장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R&D사업 기획·평가관리 ·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 기상상당시설 운영·관리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도 · 환경산업해외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경영컨설팅지원기업수 · 기상기후산업활성화노력도 · 기상기후산업매출액

자료: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3) 「대행업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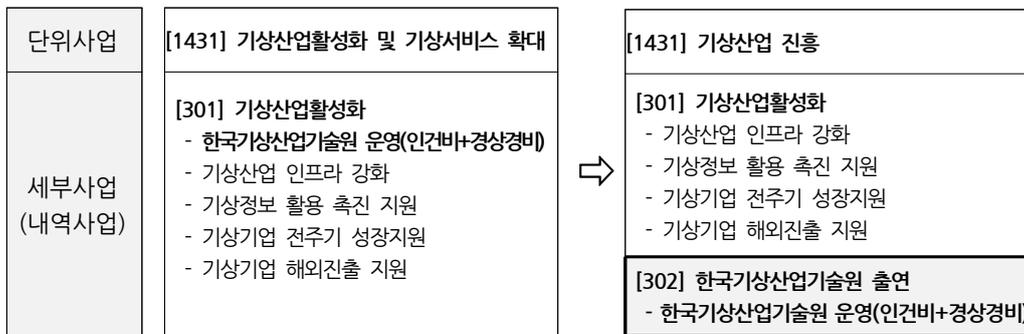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무사업"이라 함은 기상청 민간대행사업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프로그램예산⁴⁾ 내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면, 기관 지원예산의 운영 성과를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에서도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의 경우 기관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증가소요는 최소화⁵⁾하고 있는 등 기관 지원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법적근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관 출연금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재원 성격에 적합한 심의절차를 적용하고 기관 운영지원 예산목적에 맞도록 집행·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 예산 편성 개편 방안 예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순서로 분류하며, 세부사업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들의 최소단위이다.

5)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7.4.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해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강상규 예산분석관
김성은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43-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